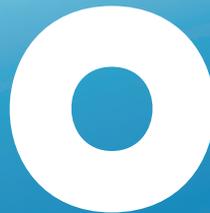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일시 2023. 11. 23.(목) 14:00 ~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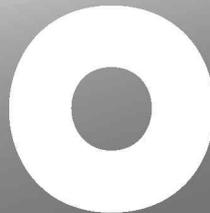
장소 회의실 by 필원
(센터포인트광화문 빌딩 지하1층)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일 시 2023. 11. 23.(목) 14:00 ~ 17:00

장 소 회의실 by 필원
(센터포인트광화문 빌딩 지하1층)



2023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 일시 : 2023. 11. 23.(목) 14:00~17:00
- 장소 : 회의실 by 필원(센터포인트광화문 빌딩 지하1층)
-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발표
14:00~15:10	행사소개 및 발표	-
14:00~14:10	개회사	이석준 정책교육국장
	주제발표	좌장 :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14:10~15:10 각15분	[발제1]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2]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 제안	유은혜 (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발제3] 감염병 상황의 인권쟁점에 관한 인식 :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인권 쟁점 분석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발제4] 인권 통계의 분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김대훈 (스탯코리아)
15:10~15:20	휴식	
	지정토론 (15:20~16:40)	-
15:20~16:40 (각20분)	1.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공석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김혜영(충청남도 인권센터장)
	2. 혐오표현의 실태 및 정책적 제안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석(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3.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활용한 감염병 상황 관련 인권 쟁점 분석	한귀영(한겨레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4. 통계로 본 인권 분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강현철(호서대 빅데이터시학과 교수) 김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16:40~17:00	종합토론 및 마무리	

목 차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분석

1.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5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 제안	21
	유은혜(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3.	감염병 상황의 인권쟁점에 관한 인식	43
	: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인권 쟁점 분석	
	김종우(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2023년 인권통계 분석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59
	김대훈(스탯코리아 대표)	

지정토론

1.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공석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73
	김혜영(충청남도 인권센터장)	75

2.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 제언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3

이용석(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90

3.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활용한 감염병 상황 관련 인권 쟁점 분석

한귀영(한겨레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101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05

4. 통계로 본 인권 분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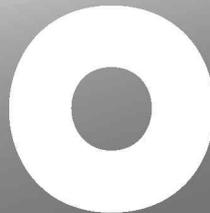
강현철(호서대학교 빅데이터학과 교수) 109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111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분석

1.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3.11.23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한준 연세대학교
<h2>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h2>		

Table of Contents

- I 문제제기 및 현황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결론 및 제언

문제제기 및 현황

I 문제제기 및 현황

문제제기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이후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인권제도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광역 수준 뿐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인권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지방마다 인권 규범과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음
-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인권의 제도화 과정은 편차를 보이며 진행되어 왔고, 최근 들어 지역에 따라 인권제도의 위기 혹은 후퇴가 나타나기도 함
- 지난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의 제도화와 함께 지역별로 인권 실태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살펴볼 필요가 제기됨
-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역별 인권 상황 평가와 의식, 행동,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자 함

I 연구의 배경과 개요

수준별 인권의 이행체계

	세계	지역	국가	지방
규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지역인권규약 (예: 유럽인권협약)	헌법, 인권 관련 법령	인권 관련 조례
기구	국제인권기구	지역별 인권기구 (예: 유럽인권재판소)	정부, 국가인권기구	지자체, 지자체 인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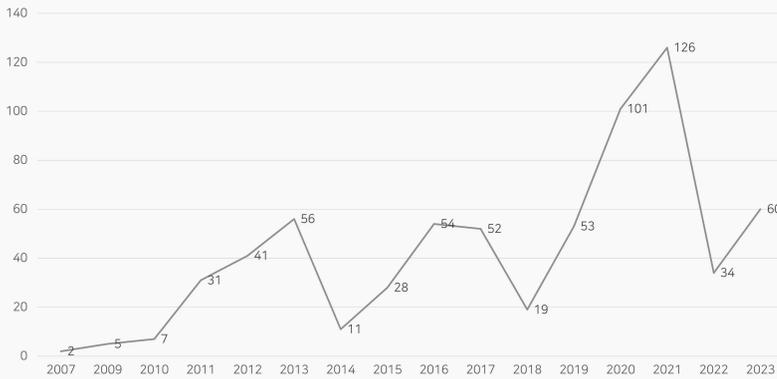
I 연구의 배경과 개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2023.10)

광역시	광역시	교육청	기초	기초지자체 수	기초제정비율
강원	1		6	18	33%
경기	1	1	16	31	52%
경남	1		7	18	39%
경북	1		3	23	13%
광주	1	1	5	5	100%
대구	1		5	8	63%
대전	1		4	5	80%
부산	1		10	16	63%
서울	1	1	21	25	84%
세종	1				
울산	1		5	5	100%
인천	1		5	10	50%
전남	1		11	22	50%
전북	1	1	8	14	57%
제주	1	1			
충남	1	1	15	15	100%
충북	1		1	11	9%
총합계	17	6	122	226	54%

I 연구의 배경과 개요

연도별 지자체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건수



I 연구의 배경과 개요

지역별 인권 제도 현황 (2022년 기준)

	인권위원회	인권 보호관	인권센터	인권전담부서
	조언(자문), 홍보, 조사구제	진정사건 통해 시정권고	주민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행정부 내 담당
강원	0	0	0	0
경기	0	0	0	0
경남	0	X	X	0
경북	0	X	X	0
광주	0	0	X	0
대구	0	0	X	0
대전	0	0	0	0
부산	0	0	0	0
서울	0	0	X	0
세종	0	X	X	0
울산	0	0	0	0
인천	0	0	X	0
전남	0	0	0	0
전북	0	0	X	0
제주	0	X	X	0
충남	0	0	0	0
충북	0	0	0	0

I 연구의 배경과 개요

지역별 인권 정책 현황 (2022년 기준)

	인권정책기본계획	사업평가	실태조사
강원	2차	통합	0
경기	2차	통합	0
경남	1차	별도	X
경북	1차	통합	0
광주	3차	통합	0
대구	1차	별도	0
대전	2차	통합	X
부산	2차	통합	0
서울	3차	통합	0
세종	2차	별도	0
울산	2차	통합	X
인천	1차	별도	0
전남	2차	통합	0
전북	2차	별도	0
제주	2차	통합	0
충남	2차	통합	0
충북	2차	통합	0

연구 방법

II 연구 방법

연구의 방법

- 지역별로 인권 관련 의식과 행동, 경험과 인권상황 평가를 직접 비교할 경우 지역별 인구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채 지역간 차이와 지역간 인구구성의 차이가 구별되지 못함
- 지역 수준에서의 인구적, 사회경제적 특성의 통제를 위해 비교하고자 하는 인권실태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 구분 외에 응답자의 만 연령, 성별, 학력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한 뒤 지역간 차이를 측정
- 인구실태에 대한 측정은 다문항 척도를 구성해서 연속변수에 근접하도록 변형하여 활용하였음

II 연구 방법

변수의 측정 (1)

- **인권 존중:** 본인, 사회적 약자·소수자, 우리 사회 전반,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인권 존중 정도 4점 척도 측정값 합산
- **권리 존중:**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각각에 대해 얼마나 존중 된다고 보는가 4점 척도 측정값 합산
-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각각에 대해 침해 당한 경험의 횟수
- **차별 경험:** 성별, 임신·출산, 종교, 정치·사상, 장애, 나이,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 학력, 인종,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 출신지역,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경험의 종류 수

II 연구 방법

변수의 측정 (2)

- **지역인권제도 필요성:** 지역의 인권기본조례, 학생인권조례, 지역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제도 필요성 4점 척도 측정값 합산
- **인권제도 인지:** 헌법의 인권 조항, 지역의 인권기본조례, 학생인권조례, 지역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제도 인지 4점 척도 측정값 합산
- **인권조례 비율:** 광역 지자체별 기초 지자체 중 인권조례 제정된 비율
- **인권 교육:** 광역 지자체별 인권 교육 이수한 비율
- **인권 지식:**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과 내 인권이 침해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아는 정도 4점 척도 측정값 합산

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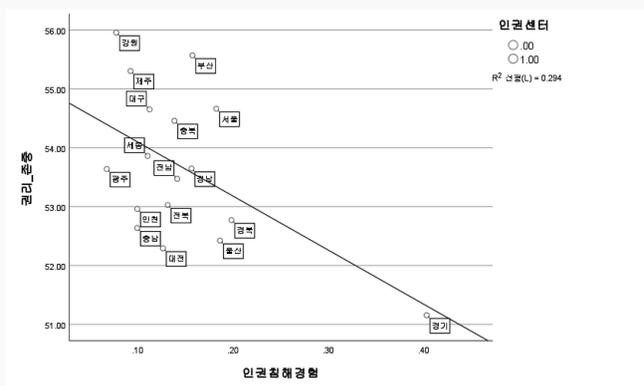
변수의 측정 (3)

- **인권 의견:** 기업의 인권책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외국인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정,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임신중절 허용, 노숙자·장애인 등 주거지원 찬성/반대 4점 척도 측정값 합산
- **인권 활동:** 피해자 조연·상담, 약자 지원, 소수자·약자 기부, 인권단체 가입·활동, 인권 관련 글쓰기, 인권 청원·서명, 인권 캠페인·집회 등에 대한 참여 여부 합산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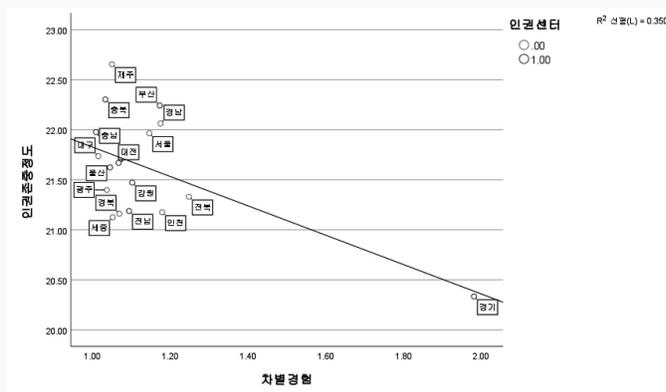
III 연구 결과

인권침해 경험과 정치적/경제.사회.문화권 존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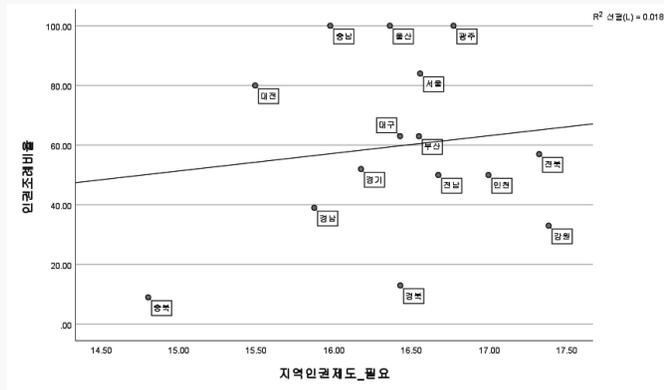
III 연구 결과

차별 경험 평균 개수와 인권존중 정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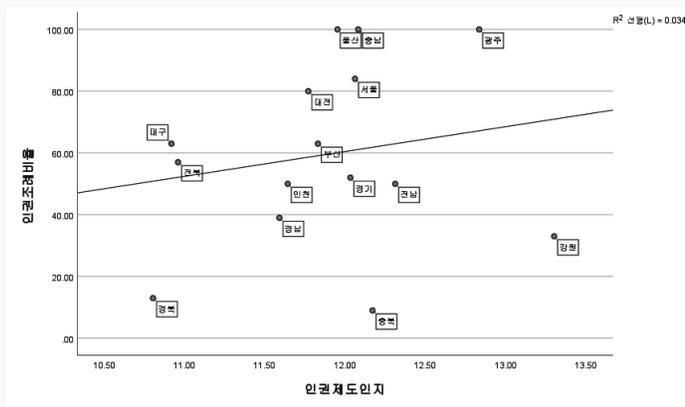
III 연구 결과

지역인권제도 필요성 인지와 기초 지자체 인권조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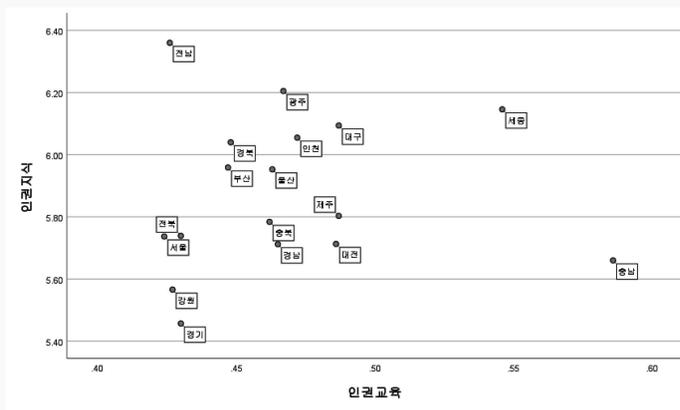
III 연구 결과

인권제도 인지 수준과 기초 지자체 인권조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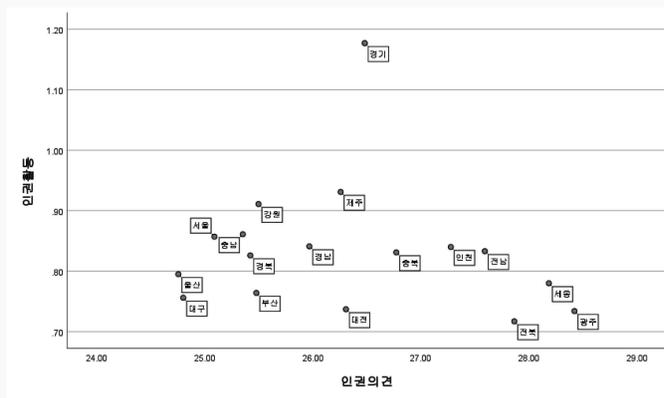
III 연구 결과

인권 교육 이수 비율과 인권 관련 지식 수준



III 연구 결과

인권쟁점에 대한 의견과 인권활동 참여 정도



결론과 합의

IV 결론과 합의

결론과 합의

- 광역 수준에서는 인권조례와 인권 기관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지만,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광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인구적 속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 지역별로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이 많은 지역에서 인권 및 권리의 존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극단치로 경기도 두드러짐
- 지역 인권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했지만 기초 지자체 인권조례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강원, 전남북, 인천, 충북 등이 있음
-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인권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나지만 예외적인 지역으로 전남(교육↓, 지식↑)과 충남(교육↑, 지식↓)이 있음
- 인권쟁점에 대한 의견과 인권활동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보이지 않으며, 경기도 이상치로 나타남

2023.11.23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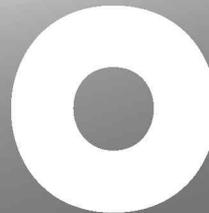
한준
연세대학교

**Thank you
for listening!**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분석

2.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 제언

유은혜(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 제안



유은혜(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2023.11.23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유은혜 송실대학교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사회 혐오 표현의 실태와 정책제안 : 20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p>		

Table of Contents

- I 연구 배경과 개요
-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 III 지자체의 제도적 대응과 혐오 표현
- IV 정책 대응과 제언

I 연구의 배경과 개요

연구 필요성

- 사회적·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은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공격을 일삼는 표현은 항상 존재.
- 2010년대에 들어 디지털 사회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혐오표현'의 증가로 인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대두.
-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에 대한 정책제언이 조심스러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인권 의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

I 연구의 배경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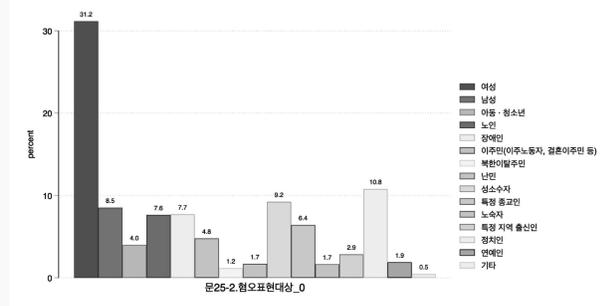
연구 목적

1. 본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혐오표현의 인지, 그 심각성의 인식,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본다.
2. 자주 접하게 되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경로에 따른 현황 역시 파악하고자 한다.
3. 지역별 인권정책(즉, 인권센터, 인권조례, 인권보호관 등의 유무)과 예산이 혐오표현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줄 수 있는지를 성인지예산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4.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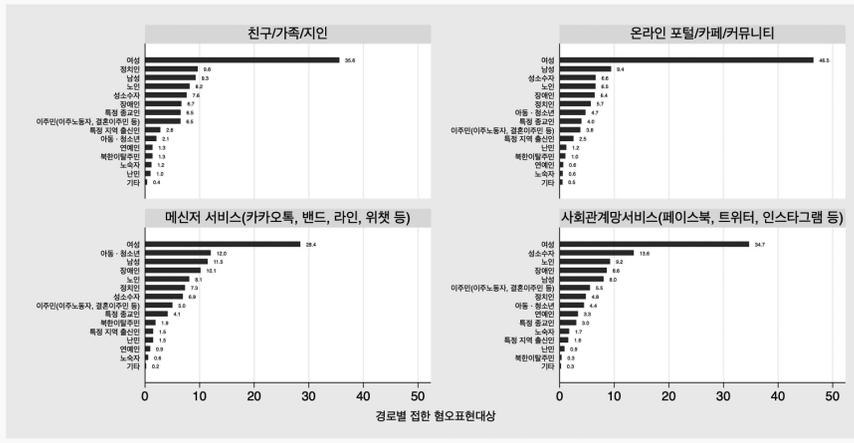
2023년 기준, 가장 많이 언급된 혐오 표현의 대상



- 가장 많이 언급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31.2%)였으며 그 다음은 정치인(10.8%), 성소수자(9.2%) 순이다.
- 정치인과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범주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혹은 혐오의 대상이 보다는 개인(유명인)에 대한 혐오 표현(연예인의 경우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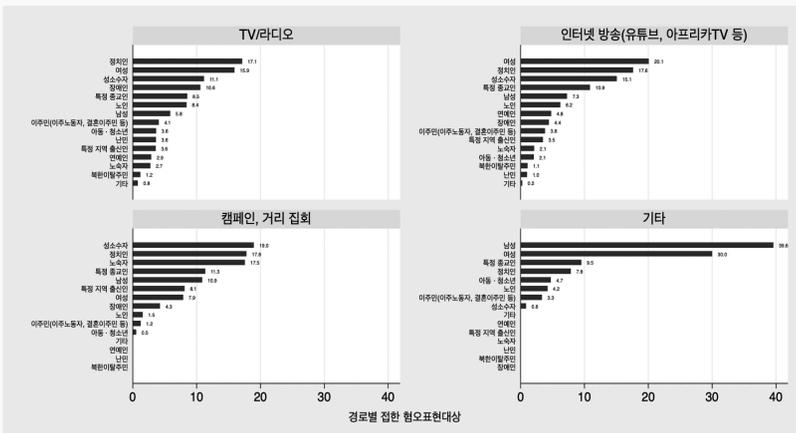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혐오표현 경로별 혐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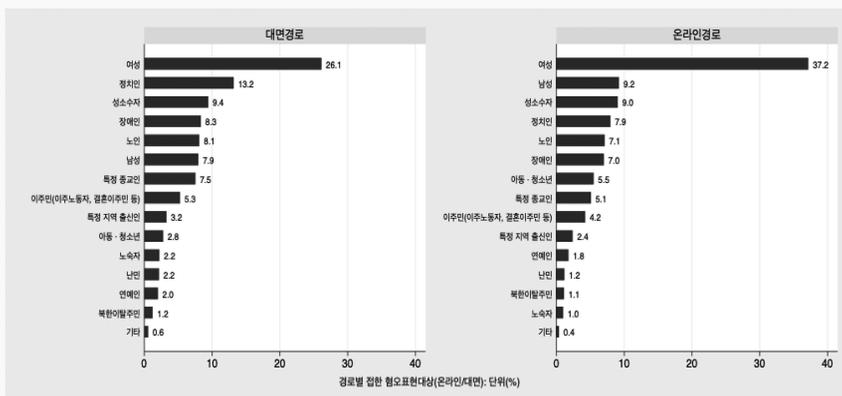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혐오표현 경로별 혐오 대상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를 대면(1, 5, 7, 8)과 온라인(2, 3, 4, 6)으로 나누었을 때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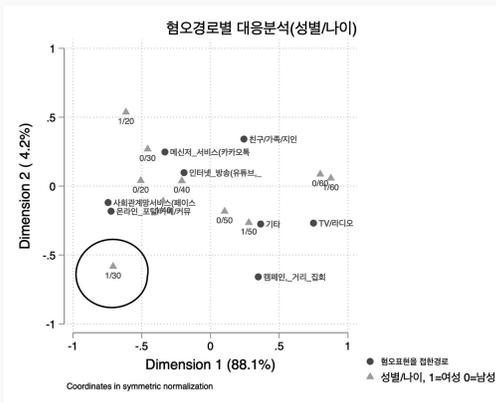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를 대면(1, 5, 7, 8)과 온라인(2, 3, 4, 6)으로 나누었을 때 차이

1. 온라인 경로(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메신저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 방송)라고 해서 혐오의 대상에 유사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개인들이 접한 혐오대상이 다를 수 있다.
2. 온라인 혐오라고 이야기 할 때, 매체별로 다양하게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기존연구의 경우 온라인 혐오표현을 특수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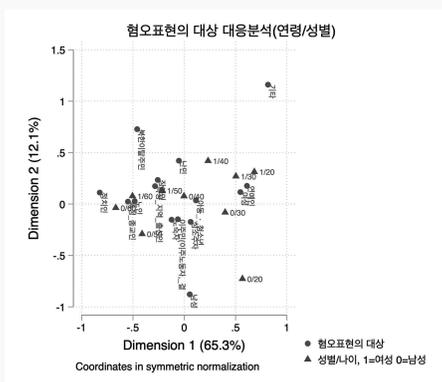
혐오표현 경로별 대응분석: 연령/성별을 중심으로



1. 연령과 세대별로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를 대응분석한 결과, 확실히 세대별로 유사한 경로를 통해 표현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그러나 20대와 3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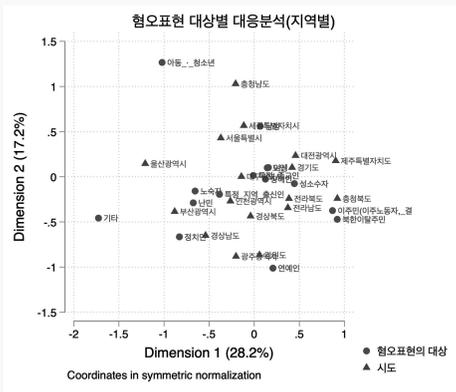
혐오표현 경로별 대응분석: 연령/성별을 중심으로



- 20대 남성(0/20)의 경우 주된 혐오표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응답에서 '남성'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패턴을 보인다.
- 20대/30대/40대의 여성(1/40, 1/30, 1/20)의 경우 연예인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자주 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0대 남성(0/30)이 20대 남성(1/20)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 즉 20대 남성과 여성은 본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혐오 표현의 대상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남성과 여성 차이가 거의 없는 양상을 보인다(1/60, 0/60).
- 60대의 경우 노인, 특정 종교인, 정치인,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자주 접한다고 볼 수 있다.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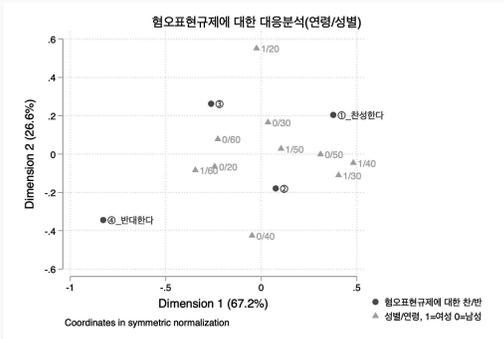
혐오표현 경로별 대응분석: 지역을 중심으로



- 광역시와 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
- 광역시의 경우 노숙자/특정지역 출신인, 난민, 장애인, 특정 종교인, 여성 노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으며 도의 경우 이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치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패턴임을 찾아볼 수 있다.
- 여성, 노인, 특정종교인, 장애인, 성소수자 역시 서울, 대전, 경기, 대구와 같은 대도시와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유사한 근접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혐오표현이다.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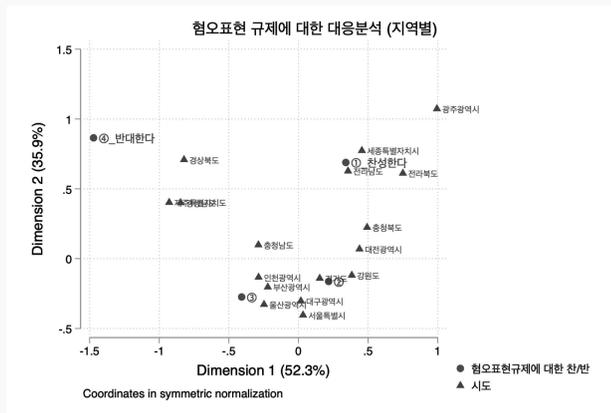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분석: 연령/성별을 중심으로



- 30대, 40대 여성(1/30, 1/40)과 50대 남성과 여성(0/50, 1/50)의 경우 혐오표현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내어 놓는 경향이 있다.
- 20대와 60대 이상 남성(0/60, 0/20), 60대 이상 여성(1/60)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분석: 지역을 중심으로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혐오표현의 경험(인지)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난 1년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

-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
- 세대간 차이는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없음
- 그러나 20대와 비교했을 때 40대 이상 세대부터는 혐오표현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드러남
- 교육 수준은 혐오표현의 경험(인지)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에 거주할 수록 혐오표현 경험이 많음
- 직업에 따른 차이는 관리자급과 비교하였을 때 사무직 만이 덜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동안 인권교육 유무가 혐오표현 인지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 종교가 있는 경우 혐오표현의 경험이 많음
- 정치적 성향은 혐오표현의 경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의 인권침해경험과 소수자를 지인, 가족, 친구로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혐오표현을 경험(인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혐오표현이 얼마나 심각한가?

-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 세대간 차이는 20대와 비교했을 때, 30대, 40대의 차이가 없음
- 그러나 20대와 비교했을 때 50대 이상 세대부터는 혐오표현이 덜 심각하다고 생각.
-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생각.
- 도시에 거주할 수록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생각.
- 직업에 따른 차이는 관리자급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모든 직업군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낮게 생각.
- 최근 1년동안 인권교육 유무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 종교가 있는 경우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생각함.
- 정치적 성향역시 보수적일 수록 혐오표현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함.
- 본인의 인권침해경험이 많을 수록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소수자 지인이 있는지의 여부는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남/녀 차이가 없음
- 세대간 차이는 20대와 비교했을 때 30대와 20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나 20대와 비교했을 때 40대와 50대 세대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나, 20대와 60대 이상 세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20대의 경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기 때문에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는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혐오표현에 찬성한다.
- 도시에 거주할 수록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 직업에 따른 차이는 관리자급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모든 직업군이 혐오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동안 인권교육 유무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찬성하는 데 양적인 효과를 가진다.
- 종교의 유무는 혐오표현의 법적규제 의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록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 본인의 인권침해경험이 많을 수록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찬성하나, 소수자 지인이 있는지의 여부는 혐오표현의 법적규제 찬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1)	(2)	(3)
	문 25. 최근 1년동안 혐오표현 경험	문 26. 혐오표현 심화경향	문 27. 혐오표현 법적규제
여성	0.078** (0.016)	0.031* (0.016)	-0.010 (0.017)
연령(중거 20 대 이하)			
30 대	0.035 (0.038)	-0.028 (0.028)	-0.052 (0.031)
40 대	0.134** (0.033)	0.037 (0.027)	-0.083* (0.028)
50 대	0.152** (0.031)	0.074* (0.027)	-0.082* (0.026)
60 대 이상	0.275** (0.031)	0.178** (0.027)	-0.028 (0.028)
교육이상	-0.022 (0.018)	-0.031* (0.015)	-0.038* (0.017)
도시 거주	-0.134** (0.018)	-0.048* (0.022)	0.064* (0.023)
직업(중거:관리자)			
사무직	0.064* (0.032)	0.158** (0.028)	0.089* (0.031)
서비스/판매직	-0.028 (0.032)	0.120** (0.027)	0.092* (0.030)
생산/기술직	0.018 (0.037)	0.157** (0.032)	0.135** (0.03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90 (0.041)	0.259** (0.044)	0.126* (0.046)
단순노무직	0.054 (0.040)	0.140** (0.037)	0.099* (0.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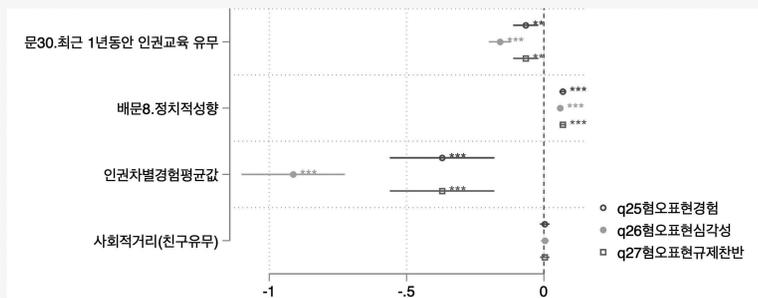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기타	-0.143 (0.278)	0.066 (0.174)	0.220 (0.202)
부적	0.066 (0.032)	0.172** (0.029)	0.090* (0.031)
최근 1년동안 인권교육 유무	-0.345** (0.029)	-0.160** (0.021)	-0.066** (0.023)
종교있음=1	-0.034* (0.014)	-0.046** (0.013)	-0.021 (0.015)
정치적성향	0.006 (0.006)	0.059** (0.006)	0.069** (0.006)
본인의 인권침해경험	-1.587** (0.117)	-0.913** (0.096)	-0.371** (0.097)
사회적거리(소수자지인)	-0.059** (0.007)	0.004 (0.007)	0.003 (0.009)
Constant	3.198** (0.050)	2.020** (0.043)	1.825** (0.047)
Observations	15303	15303	1530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p < 0.01, *** p < 0.001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사회적 거리? 혹은 본인의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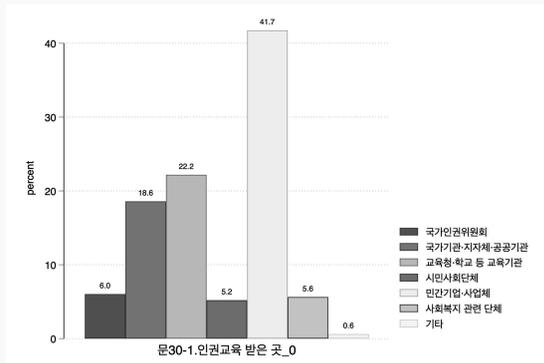


- 본인의 차별경험이 혐오표현의 인지/심각성/규제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인권교육의 중요성

어디서 받는 인권교육이 효과적인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1527명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II 2023년 조사를 통해 본 혐오표현의 현황과 특성

인권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

어디서 받는 인권교육이 혐오표현 관련 인지에 유의미한가? (n=1527)

	(1) 문 25.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 경험	(2) 문 26. 혐오표현 심각성	(3) 문 27. 혐오표현 법적규제
국가인권위원회/국가기관/지자체(준거집단)			
교육청/학교등 교육기관	-0.102 (0.079)	-0.071 (0.059)	-0.099 (0.066)
시민사회단체	-0.475* (0.133)	-0.068 (0.090)	0.053 (0.089)
민간기업/사업체	-0.197* (0.064)	-0.020 (0.048)	0.057 (0.055)
사회복지관련단체	-0.193 (0.107)	-0.080 (0.078)	0.014 (0.097)
기타	0.155 (0.314)	-0.348* (0.163)	-0.199 (0.217)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한 범주로 묶은 후 준거집단을 삼아 비교
-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기업/사업체에서 인권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이 경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혐오표현인지에 있어 국가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사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혐오표현을 잘 접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혐오표현 심각성과 혐오표현 법적규제 찬반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다른 타기관의 차이가 없음.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 표현

III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 표현

지역관련 변수들을 고려한 혐오표현 실태

지자체별 인권정책을 고려한 혐오표현 실태

- 지자체별 인권조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행정적인 절차 등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음. 구체적으로 혐오표현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지자체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인권실태조사에 나타난 혐오표현 대상 그룹별로 살펴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별첨).
- 서울, 광주, 경기도에는 학생인권조례에 '혐오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존재.

III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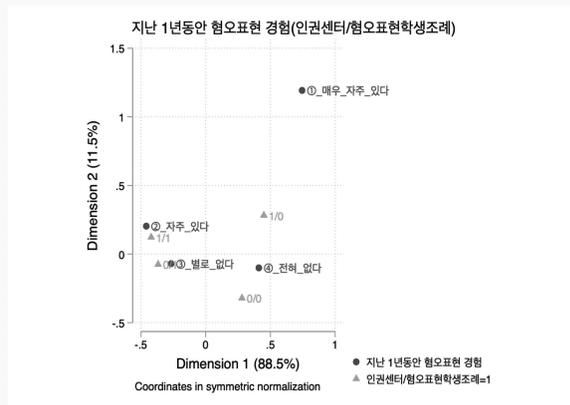
지역관련 변수들을 고려한 혐오표현 실태

각 지역별로 2022년 기준 인권위원회와 인권전담부서는 모두 존재

- 인권위원회(조언이나 자문, 홍보, 조사구제)/인권전담부서(행정담당)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권보호관(진정사건을 통해 시정을 권고)의 유무, 인권센터(주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의 유무에 따라 다른 지점이 있는지 대응분석을 시도.
-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중 '혐오표현'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거나 혐오표현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경우 대응분석을 같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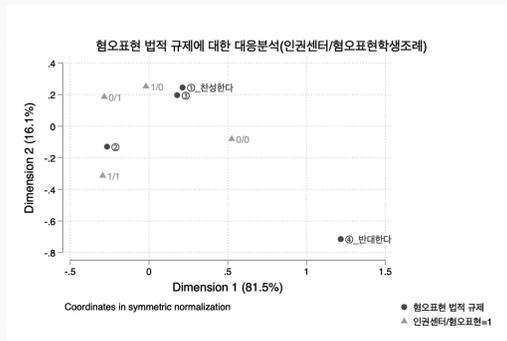
III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 표현

지역관련 변수들을 고려한 혐오표현 실태



III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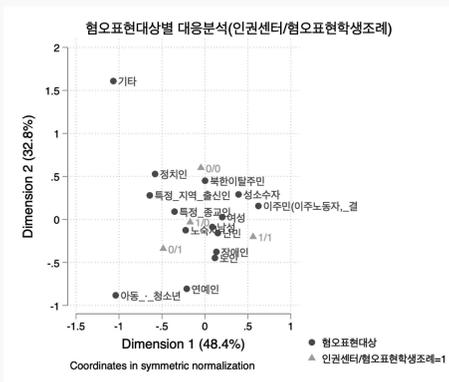
지역관련 변수들을 고려한 혐오표현 실태



- 지자체에 인권센터가 존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조례가 있는 경우(1/1) 찬성하는 쪽(2)으로 의견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 매우 찬성하거나 혹은 매우 반대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설문응답자들이 1대신 2, 4대신 3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III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 표현

지역관련 변수들을 고려한 혐오표현 실태



- 지자체에 인권센터가 존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조례가 있는 경우(1/1), 혐오표현의 대상들이 난민, 장애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지자체에 인권센터도 없고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조례가 없는 경우(0/0)은 혐오표현을 접하는 대상이 정치적인 대상들인 경우가 많다(정치인, 북한 이탈주민, 특정지역 출신인)

III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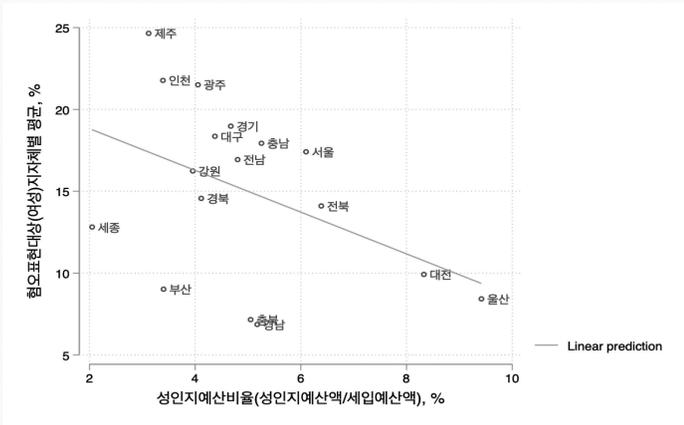
인권예산

성인지예산을 중심으로

- 인권의식, 혹은 혐오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특정할 수가 없음. 예를들어 한 지자체의 예산안을 보더라도 인권의 문제는 사회복지예산, 성인지예산, 인권행정기구 운영에 대한 예산등으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뽑아내기 어려움.
- 지자체별 성인지예산을 중심으로 관련 혐오표현 대상(여성)에 대한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인가?
- 지자체별 성인지예산비율(성인지예산액/세입예산액*100) 평균(%)과 지자체별 혐오표현 대상 여성에 유의미한 음의 감소효과가 나타남(회귀분석 결과, beta=-1.23, p<.05).
- 혐오표현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 특히 인지에 관한 예산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III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 표현

성인지 예산과 혐오표현대상 사이의 관계



정책대응과 제언

IV 정책대응과 제언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 제언

1. 혐오표현 법적규제/표현의 자유

- 혐오표현법적규제에 대한 의견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항상 충돌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20대들이 혐오표현 규제에 반대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 수록 혐오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별, 거주지별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의 문제와도 얽여있으며 또한 혐오의 대상을 하나하나 규제를 한다는 것의 실효성을 물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현재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대해 단순히 찬/반의 논의만을 알아볼 수 있었으나 차후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서는 본 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혐오표현 경로의 다양성(온라인매체라고 해서 무조건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것은 아니다)과 혐오표현 대상의 집중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제의 문제를 접근해야할 것이다.

IV 정책대응과 제언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 제언

2. 인권교육의 혐오표현 인지, 심각성, 규제찬반에 대한 효과성

- 인권교육이 혐오표현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파악하며, 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을 내는데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전체 표본에서 지난 1년동안 인권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체응답자 중 약 10%에 불과하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민간기업/사업체'에서 였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들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혐오표현인지에 있어 국가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비해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인권교육 역시 '시민단체'나 '민간기업/사업체'이므로 이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임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성(사회적 위축, 심리적 해악, 사회적 배제, 차별과 폭력의 발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첫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IV 정책대응과 제언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 제언

3. 지자체별 인권정책/조례/예산과 혐오표현

- 사실 혐오표현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지자체별의 인권정책이나 조례, 혹은 사업시행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인권센터와 구체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이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혐오표현규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혐오표현 인지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제도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인권예산에 있어서도 혐오표현이나 혹은 인권자체에 대한 예산항목을 특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항목들이 교차되어 있어서 인권 혹은 혐오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 혐오표현, 차별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예산의 배정은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IV 정책대응과 제언

본 조사 결과 해석에서 유의할 점

혐오에 관한 조사의 한계

- 우선 본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혐오'를 묻는 질문들은 대부분 본인이 혐오표현을 하였는가라는 민감한 질문이 아닌, 본인이 지난 1년 간 "혐오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 경로는 무엇인가?", "들어 본 적이 있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따라서, 본 분석 결과의 해석은 혐오표현을 하는 대상들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며 지역별의 결과도 개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의 문제이지 그 지역에 혐오가 만연한하다는 식의 해석은 지양해야할 것이다.

2023.11.23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유은혜
승실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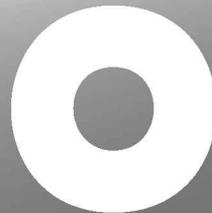
Thank you
for listening!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분석

3.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인권 쟁점 분석

김종우(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감염병 상황의 인권쟁점에 관한 인식



김종우(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2023.11.23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김종우 연세대학교
<h2>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h2> <p>: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 19 관련 인권쟁점 분석</p>		

Table of Contents

- I 조사 개요
- II 코로나 19와 인권 연구 동향
- III 결과: 코로나 19에 따른 인권 상황 평가
- IV 결과: 코로나 19에 따른 주요 어려움
- V 결과: 코로나 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조사개요

I 조사 개요

배경

- 2023년은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 회복에 진입한 시기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감염병의 범유행이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포괄적인 진단을 수행

목적

- 감염병 범유행에 따른 인권 상황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감염병 범유행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의 현상, 원인 및 그 영향에 관한 분석 실시
-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 활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감염병 범유행과 인권 상황과의 관련성 및 영향을 분석
- 정책적 시사점 제공: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과 패턴, 그리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근거기반 접근 토대로 정책 제언

I 조사 개요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2020,2022) 자료 활용
- 코로나19에 관한 문항을 재구성하여 종속변수로 활용 (상세사항은 우측 표 참조)

방법

- 다중회귀분석: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유형, 코로나19 상황의 인권 문제 유형을 분석
- 텍스트마이닝(Dynamic Topic Model): 기존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대규모 텍스트의 내용과 주제를 시계열적으로 요약

종속 변수(주요 분석 대상)	응답
(Q38)코로나19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Q39)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1순위	일자리 문제/경제적 문제/위생 문제/교육 문제/돌봄 문제/편의-문화시설 이용 문제/고립-우울감/감염 후유증/기타
(Q40)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방역 과정의 사생활 침해/방역에 의한 집회제한/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백신 접종에 따른 차별/영업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방역에 따른 복지시설 접근제한/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증가

코로나 19와 인권연구 동향

II 코로나 19와 인권 연구 동향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코로나 19와 인권

- '시라쿠사 원칙(Syracuse Principles)'은 긴급 상황에서 인권 제한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UNHCR, 1985)
- UN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범유행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룬 가이드라인인 "COVID-19 and Human Rights: We are all in this together"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인권을 중요한 6대 인권 메시지(Six key human rights messages)를 강조
 - 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 ② 차별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의 영향이다.
 - ③ 모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
 - ⑤ 어떤 국가도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⑥ 우리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더 나아져야만 한다.

II 코로나 19와 인권 연구 동향

코로나 19와 인권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주제1: 팬데믹 대응과 국가별 인권 이슈

-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인권 이슈에 관한 관심이 초기에는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

주제2: 아동/청소년 인권과 국제 협력

- 아동/청소년 인권과 국제 협력에 관한 연구는 2020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점차 감소

주제3: 감염병 대응 연구와 국가 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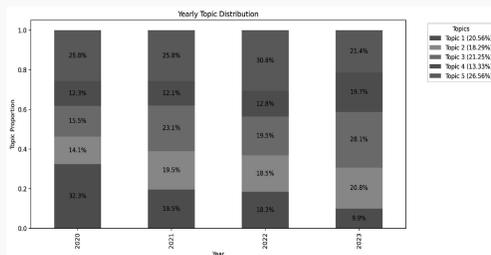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

주제4: 팬데믹 시대의 인권과 교육

-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동시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장기적인 인권 교육에 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

주제5: 감염병 대응과 장애인 인권 연구

- 초기에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주요 취약계층인 장애인 인권이 주요한 관심사였지만 점차 관련 연구의 빈도가 줄어듦



II 코로나 19와 인권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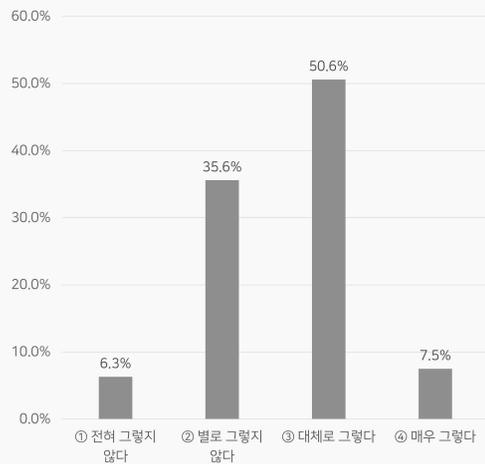
요약 및 논의

- 이러한 연구 동향을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등장한 인권 쟁점은 주로 방역 등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연결될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쟁점들이 부각
- 방역과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무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행위자
- 이전의 감염병 유행, 예를 들면 MERS나 SARS와 같은 경우에서도 인권 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나, 코로나19의 경우 그 규모와 영향력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방역 조치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여기서 국가의 책무성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이 책무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까지 이어짐
- 이러한 국가 책무성 문제는 방역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음

코로나 19와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III 코로나 19와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58.1%)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이 변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
-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약 40%에 달함
- 우리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19는 인권 상황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도 주목할 필요



III 코로나 19와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코로나 19와 인권 상황 평가에 관한 주요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 자신이나 주변 사회의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인권 상황 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관찰
- 자신에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코로나19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
- 인권 교육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수록, 코로나19와 관련된 인권 상황의 부정적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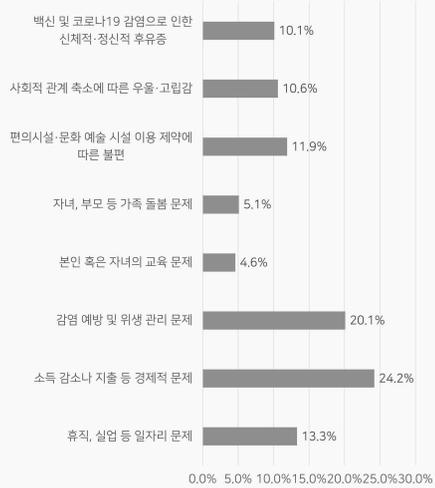
범주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B	SE	β
사회인구 요인	연나이	-0.005	0.002	-0.082**	-0.005	0.002	-0.082**
	성별	0.037	0.057	0.022	0.034	0.056	0.020
	학력	0.008	0.044	0.008	0.016	0.044	0.015
	종교여부	0.020	0.048	0.014	-0.006	0.048	-0.004
	지역	0.087	0.064	0.044	0.073	0.063	0.037
	관리전문직	0.010	0.101	0.006	0.017	0.100	0.010
	사무원매직	0.025	0.091	0.017	0.054	0.090	0.037
	농림수산직	0.039	0.102	0.020	0.061	0.100	0.031
	정치_진보	0.096	0.054	0.061	0.057	0.054	0.036
	정치_보수	0.117	0.065	0.062	0.125	0.064	0.066*
	웰스득	0.064	0.128	0.020	0.073	0.127	0.023
	삶 만족도	-0.010	0.013	-0.024	-0.010	0.014	-0.024
	인권인식				0.104	0.050	0.073**
	인권태도				-0.044	0.041	-0.034
인권참여				0.065	0.021	0.105**	
인권커리큘				0.088	0.029	0.100**	
인권쟁취성				0.059	0.037	0.052	
인권관련 요인	필요 표현 인 식				-0.051	0.033	-0.053
	인권교육효 율				-0.175	0.043	-0.152***
	인권교육필 요성				0.058	0.048	0.047

p<0.1* p<0.05** p<0.001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IV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24.2%)로 나타남
-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13.3%)까지 포함할 경우, 경제적 문제는 약 37.5%에 달하는 응답자가 어려움으로 꼽고 있음
- 그 밖에 감염 예방 및 위생 문제도 큰 비중(20.1%)을 차지해, 감염병의 영향 뿐만 아니라, 질병 그 자체가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작동했음을 보임



IV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분석 결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①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미혼 및 비혼인 경우 늘어남.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하거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 감소
- ②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중장년층인 경우, 공동체 보다 개인을 중시할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거주하거나 개인보다 공동체 중시할 경우 감소함
- ③ 감염 예방 등 위생관리를 선택할 확률은 개인을 공동체 보다 중시할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우 감소
- ④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에서 늘어나며, 종사상지위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을 제외하면 모두 교육 문제 선택 가능성이 큼. 또한 개인을 공동체보다 중시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경우에도 선택 확률이 증가. 반면, 남성이거나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동체를 개인보다 중시하는 경우 선택 확률은 줄어듦

IV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분석 결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⑤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선택확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혼인 상황 중에서는 미혼 및 비혼과 사별, 교육 수준(모든 교육 수준에서 낮게 나타남)으로 나타남. 또한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록 돌봄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음
- ⑥편의시설, 문화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을 선택할 확률은 미혼 및 비혼인 경우 높게 나타남. 반면 20대~40대 연령층은 이러한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에도 낮게 나타남
- ⑦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고립감, 우울감을 선택할 확률은 정치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경우 높어남.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를 가진 경우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IV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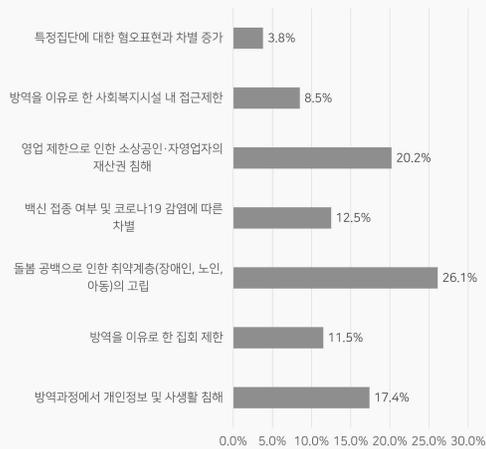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요약 표

휴직, 실업등일자리문제	소득감소나저출동경제적문제	감염예방및위생관리문제	본인혹은자녀의교육문제
혼인_미혼 및 비혼 +	연령_40대 +	지역_비도시 -	성별_남성 -
지역_비도시 -	연령_50대 +	개인중시 +	연령_30대 +
정치_보수 -	혼인_사별 -	정치_보수 -	연령_40대 +
	지역_비도시 -		지역_비도시 -
	공동체중시 -		고용_임금근로자 +
	개인중시 +		고용_자영업(고용원 없음) +
	정치_보수 -		고용_무급가족종사자 +
	정치_중도 -		공동체중시 -
			개인중시 +
			정치_중도 +
자녀, 부모등가족돌봄문제	편의시설·문화예술시설이용제약에따른불편	사회적관계축소에따른우울·고립감	
연령_30대 +	혼인_미혼 및 비혼 +	지역_비도시 -	
연령_40대 +	연령_20대 -	공동체중시 -	
혼인_미혼 및 비혼 -	연령_30대 -	정치_중도 +	
혼인_사별 -	연령_40대 -	정치_진보 +	<참조법주>
교육_중졸이하 -	공동체중시 -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교육_고졸 -			
교육_대졸 -			
공동체중시 -			
정치_보수 -			

코로나 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인식

V 코로나 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인식

-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립(26.1%)
- 이어서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유사하게, 영업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0.2%),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 공개 등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도 많은 비중을 차지(17.4%)
- 단일 항목으로는 사회권과 연관된 취약계층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또한, 일상 생활과 밀접한 쟁점일 수록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V 코로나 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인식

코로나 19 상황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인권문제 주요 결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①방역과정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선택할 확률은 중장년층, 혼인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할 경우 낮아짐
- ②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을 선택할 확률은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인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늘어남. 또한 개인을 중시하고, 정치적으로는 중도, 진보적일수록 선택할 확률이 증가
- ③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 문제를 선택할 확률은 기혼인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지역 거주하거나, 개인을 중시할 경우 감소
- ④백신 접종 및 코로나 감염에 따른 차별을 선택할 확률은 청장년층인 경우, 기혼인 경우 증가
- ⑤영업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선택할 확률은 40대인 경우 증가. 반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우 줄어들음
- ⑥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를 선택할 확률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다양한 인권 활동에 참여할수록 혐오 표현 문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늘어남

V 코로나 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인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요약 표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
연령_40대 +	인권인식 +	혼인_기혼 +
연령_50대 +	인권태도 +	지역_비도시 -
혼인_기혼 +	지역_비도시 -	개인중시 -
지역_비도시 -	개인중시 +	
	정치_중도 +	
	정치_진보 +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연령_30대 +	연령_40대 +	인권참여 +
연령_40대 +	지역_비도시 -	연령_20대 이하 +
혼인_기혼 +	공동체중시 -	연령_30대 +
지역_비도시 -		연령_40대 +
		연령_50대 +

결론 및 제언

VI 결론 및 제언

재난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취약 집단 발굴

- 특정 조건과 재난 상황에서 어떤 집단이 왜 취약한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 등이 요청
- 어떠한 종류의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접근할 필요

사회 안전망 확충

- 감염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
-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구체화하여(중장년층, 자영업 등)의 세밀한 사회보장 방안 마련 필요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감염병 추적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 개인 활용위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

사회적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및 인식 확산

- 인권 교육의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확인
- 감염병과 관련된 사회적인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

정보 접근성 제고

- 모든 사람이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확보
- 세대, 정치성향, 공동체-개인지향 등 사회인구특성에 따라 감염병 상황의 인권 문제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 정보 제공이 다양한 언어와 형식으로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023.11.23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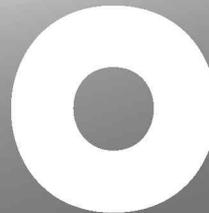
김종우
연세대학교

**Thank you
for listening!**

2023년 인권통계 분석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김대훈(스탯코리아 대표)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와 격차



김대훈(스탯코리아 대표)

2023.11.23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김대훈 스탯코리아
<h2>인권통계의 분석</h2> <p>: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와 격차</p>		

Table of Contents

- I 개요
- II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안전망
- III 노동자 간 일자치 격차
- IV 의료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 V 디지털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개요

I 개요

개요

- 인권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부터 매년 작성하는 연례적 통계
- 시민권과 참여, 사법정의, 생존권과 빈곤, 주거와 교통, 가족, 노동, 건강과 보건, 교육, 문화·미디어·정보, 환경과 생태, 가치와 의식 등 인권 상황의 주요 국면을 포함하는 11개 영역으로 구성
- 인권통계의 스토리텔링 해설을 담은 통계 설명형 보고서 작성
- 467개 인권통계를 연관 주제별로 의미 있게 구성하여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활용
- 단순 통계 제시를 넘어선 선진국형 통계 활용 방식
- 이번 보고에서는 생존권과 빈곤, 노동, 건강과 보건, 문화·미디어·정보 영역의 인권통계를 활용하여 계층 간 및 지역 각 격차 분석
- 생존권과 빈곤 영역에서는 계층 간 소득 격차, 노동 영역에서는 임금,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조건 차이에 따른 일자리 격차, 건강과 보건 영역에서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문화·미디어·정보 영역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분석

계층 간 소득격차와 사회 안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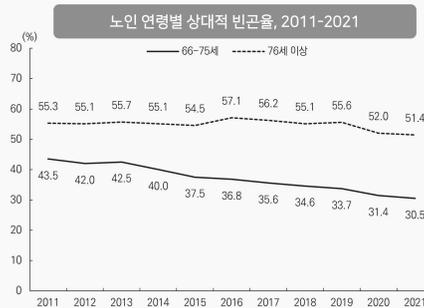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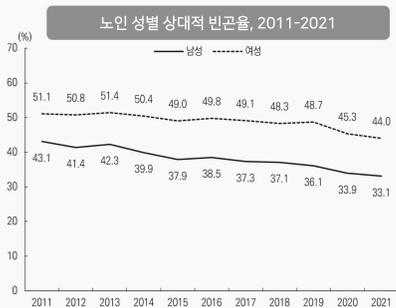
II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 안전망

-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노인 가구의 소득은 40.5%, 여성 가구의 소득은 56.9%,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70.9%,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78.3, 다문화 가구의 소득은 86.5%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소득은 96.5%, 18-65세 근로연령인구 대비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소득은 62.9%
- 특히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근로연령인구 상대적 빈곤율의 4배

연도	처분가능소득 평균(만 원)		노인 상대적 소득(%)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격차(%p)
	18-65세	66세 이상		18-65세	66세 이상	
2011	2,741	1,594	58.2	14.0	47.8	33.8
2012	2,872	1,702	59.3	13.9	47.0	33.1
2013	3,001	1,792	59.7	13.8	47.7	33.9
2014	3,006	1,869	62.2	13.7	46.0	32.3
2015	3,077	1,902	61.8	12.9	44.3	31.4
2016	3,207	1,966	61.3	12.9	45.0	32.1
2017	3,359	2,023	60.2	12.6	44.0	31.4
2018	3,464	2,112	61.0	11.8	43.4	31.6
2019	3,583	2,163	60.4	11.1	43.2	32.1
2020	3,703	2,346	63.4	10.6	40.4	29.8
2021	3,946	2,484	62.9	10.6	39.3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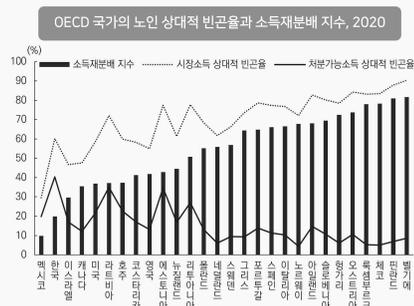
II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 안전망

- 2011-2021년 사이 남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1%에서 33.1%로 10%p 감소, 여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51.1%에서 44.0%로 7.1%p 감소
- 2021년 기준 66-75세 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0.5%, 76세 이상 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
- 2011-2021년 사이 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13%p 감소, 후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p 감소하여 상대적 빈곤율 격차가 11.8%p에서 20.9%p로 증가



II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 안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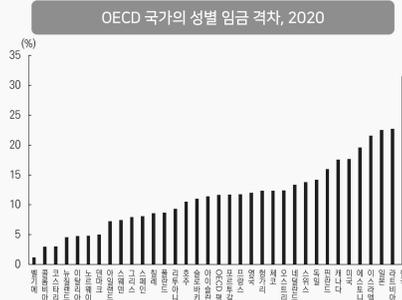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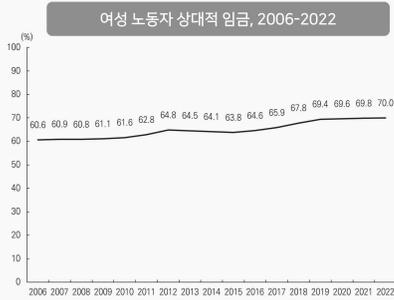
-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비교 대상 28개 국가 중 최고 수준, 유럽 국가들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10% 미만
- 상대적 빈곤율 기준 한국 노인의 소득재분배 지수(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는 2020년 기준 19.8%P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 유럽 국가들의 경우 60-80%P 수준
- 한국의 GDP 대비 노인공공복지 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3.1%로 OECD 국가 평균(7.4%)의 절반에 미달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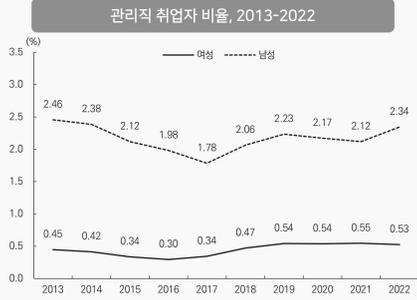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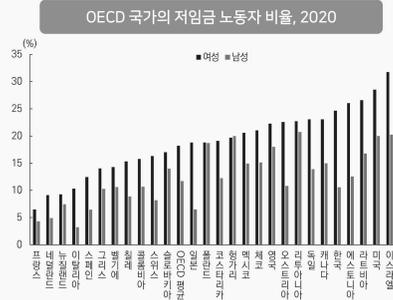
III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 여성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남성 시간당 임금 대비 여성 시간당 임금)은 2022년 기준 70.0%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1.5%로 OECD 34개 국가 중 최고 수준, OECD 국가 평균(11.6%)의 3배
- 벨기에(1.2%), 뉴질랜드(4.6%), 이탈리아(4.8%), 노르웨이(4.8%), 덴마크(5.0%) 등의 성별 임금 격차는 5% 이내에 불과
- 프랑스(11.8%), 영국(12.0%), 독일(14.2%), 캐나다(17.6%), 미국(17.7%) 등 주요국도 10%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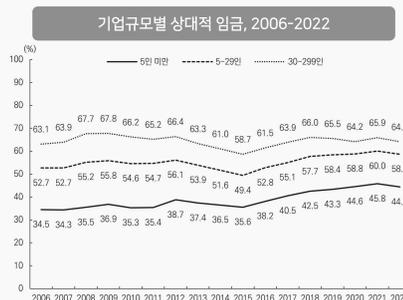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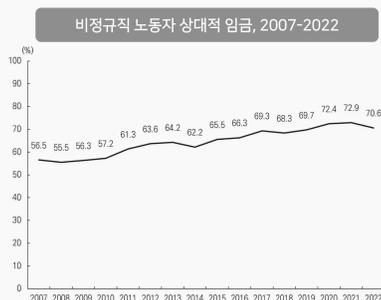
III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 2020년 기준 한국의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24.7%)은 OECD 국가 평균(18.2%)을 크게 상회, 한국의 남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10.5%)은 OECD 국가 평균(11.7%) 이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14.1%p)가 OECD 국가 평균(6.5%p)의 두 배 이상으로 최고 수준
- 2022년 기준 남성 관리직 비율은 2.34%이지만 여성 관리직 비율은 0.53%에 불과, 관리직 비율의 남녀 간 차이가 네 배 이상



III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은 2022년 기준 70.6%, 비정규직 노동자 중 한시적 노동자(51.8%), 파견/용역 노동자(55.5%), 재택/가내 노동자(56.4%), 단시간 노동자(63.6%)의 상대적 임금은 더 열악
- 300인 이상 기업 대비 30-299인 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2022년 기준 64.1%,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 임금이 더 낮아 5-29인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각각 58.7%와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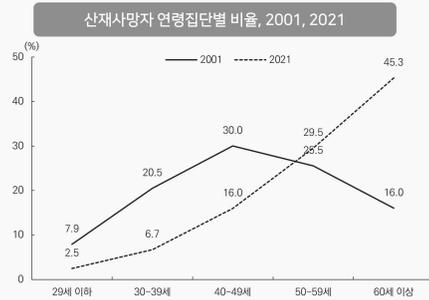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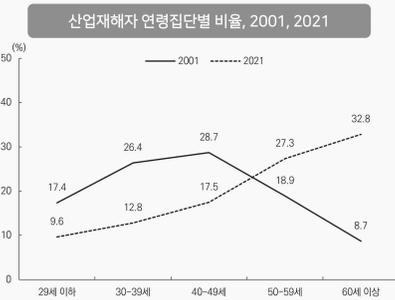
III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큰 차이, 노조 가입률에서도 매우 큰 격차
- 비정규직 사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일일 노동자와 한시적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부진
-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노조 가입률이 급격히 저하

구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조가입	
고용형태별	정규직 노동자	94.6	98.6	98.5	98.1	13.5
	비정규직 노동자	80.7	70.3	67.5	98.4	0.7
	재택/가내 노동자	81.7	83.1	87.4	100.0	1.1
	파견/용역 노동자	94.8	95.3	93.7	98.6	1.7
	일일 노동자	64.3	24.9	24.5	98.5	0.3
	단시간 노동자	84.4	83.5	81.4	97.6	0.2
	기간제 노동자	91.5	95.7	91.8	99.2	1.6
한시적 노동자	51.2	44.3	41.5	93.3	0.1	
기업규모별	5인 미만	73.7	80.5	81.0	91.6	1.1
	5-29인	95.3	92.6	93.0	99.7	4.2
	30-299인	98.2	97.5	97.6	99.9	15.0
	300인 이상	95.8	99.7	98.8	99.8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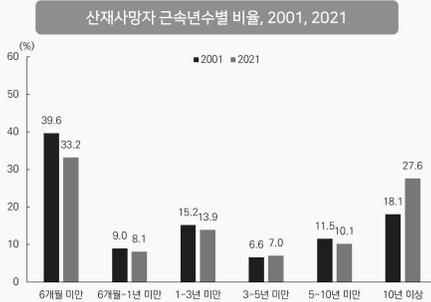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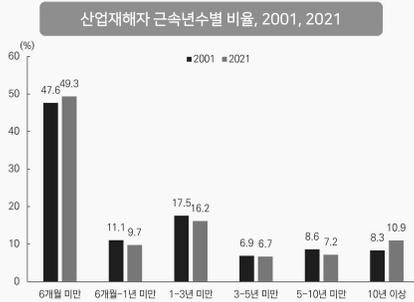
III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 산업재해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드러지게 높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낮아지지만 산재사망률은 5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500-999인 사업장에서도 높음
- 산업재해 피해자 중에서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감소하고 50대와 60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 지난 20년간 산업재해 주 피해자가 청장년층에서 중고령층으로 바뀌면서 피해자 연령 상승
- 산업재해자와 산재사망자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



III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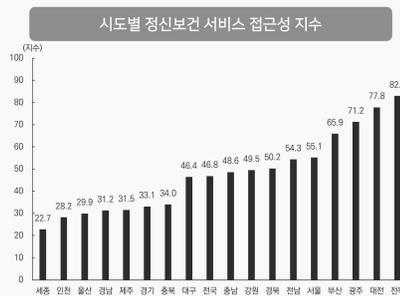
- 근속년수에 따라라도 산업재해 피해 격차가 크게 존재
- 전체 재해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절반으로 지난 20년간 변화 없이 유지
- 사망자 중에서도 6개월 미만 근속자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재해자 분포에서보다는 다소 감소
- 재해자 분포와 달리 사망자 분포에서는 지난 20년간 6개월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10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이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간 격차

IV 의료 접근성의 지역간 격차

- 의료 서비스 접근성(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와 의사 수,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 30분 이내 종합병원 접근가능인구 비율)은 서울을 비롯한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 지역과 경북, 충남,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 광역도 지역 간 격차 존재
-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인구 대비 정신건강 기관 수와 전문인력 수,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에서는 광역시와 광역도 간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디지털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V 디지털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중 고령층이 정보화(특히 역량, 활용)에 가장 취약
- 여성이 정보화 역량과 활용에서 남성보다 일관되게 더 취약
- 연령집단 사이의 정보화 격차는 모든 취약계층에서 50대에 발생하고 60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확대
- 정보화 격차는 곧 세대 간 격차의 문제

구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고령층	접근	97.3	93.7	-	-	-	101.6	98.0	88.0
	역량	64.3	47.8	-	-	-	83.8	56.7	34.6
	활용	75.5	72.2	-	-	-	94.0	79.0	53.5
농어민	접근	97.2	94.7	108.0	106.1	106.0	101.8	92.9	-
	역량	75.7	66.5	152.2	139.2	127.3	91.1	57.0	-
	활용	82.5	76.5	128.4	121.6	112.1	95.6	69.9	-
장애인	접근	97.4	95.6	103.0	100.2	100.2	99.0	93.7	-
	역량	82.4	61.2	121.6	115.8	105.3	78.5	57.3	-
	활용	85.3	77.0	110.5	106.3	103.3	87.3	69.0	-
저소득층	접근	99.7	99.2	105.3	101.9	102.4	97.5	93.9	-
	역량	96.9	89.1	134.8	114.6	103.1	79.8	60.1	-
	활용	98.5	94.5	132.0	120.4	106.7	88.0	70.1	-

2023.11.23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김대훈
스탯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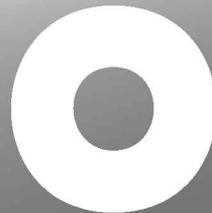
**Thank you
for listening!**

지정토론 1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공석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김혜영(충청남도 인권센터장)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공석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1.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모범 사례에 대한 발굴에 대한 기대

-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추진됨. 빠른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0년의 경험은 아직도 짧은 시간임. 지역별 인권 관련한 제도, 정책, 교육, 의식과 행동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에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존재함 (예) 지자체 리더십, 위로부터 진행된 인권 정책 제도화, 생애주기적 인권(자존감/타자 인정 및 존중) 체득과정, 글로벌 시민사회 생태계의 변화 등
-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고자 노력하는 지역에서 시작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인권의 사회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것을 모범사례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2. 인권의 제도화 및 인권실태에서 지역별 차이 요인분석

- 많은 요인 중에 유의미한 요인 탐색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예컨대 리더십 변화와 인권정책 변화의 부침 (위로부터 제도화 혹은 형식적 협치)
- 경쟁적 인권의 제도화 과정으로 인해 지역 특수성 및 역사성 간과 (아래로부터의 제도화 추진 노력)
-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 정도: 제도화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주체로서의 참여 혹은 정책 보조자 혹은 대행자 역할에 그침

- 지역 시민사회 연대 및 협력 생태계: 지역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대표하는 단체, 활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의 존재 여부 및 활동 사례

3. 연구방법론에서 고려할 점

- 외적요인: 지역 시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역사 문화적 요인 (예: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사건, 5.18 기념공원, 그리고 정기적 인권문화 행사, 광주인권상 등)이 중요함.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노출되면서 보이지 않는 인권 학습과정을 거치게 됨
- 변수의 측정: 인권 침해와 차별 경험을 개수의 평균으로 측정하는 것의 한계. 연령별로 인권학습을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인권 침해와 차별 경험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권 존중과 권리 존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별(수도권과 지방), 연령, 성별, 교육, 계층별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인권쟁점과 인권활동 참여 관계 분석에 대한 의견

- 광의의 ‘인권활동’ 개념에 포함시킨 다양한 수준의 참여 및 헌신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것을 단순 함으로 할 경우 개인별 인권활동 참여에 따른 인권 쟁점에 대한 차별적 의식 및 태도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인권활동 (activities): 피해자 조언 및 상담, 약자 지원, 소수자/약자 기부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권 대의에 대한 헌신과 참여를 요구함
- 인권행동 (action): 인권단체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인권관련 글쓰기, 인권청원 및 서명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대의에 대한 헌신과 참여가 요구함
- 인권운동 (activism): 인권 캠페인 더 나아가 특정 인권이슈에 대한 집회 참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대의에 대한 헌신과 참여를 요구함
- 이런 차원에서 인권활동을 activities, action 그리고 activism으로 구분해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함.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김혜영(충청남도 인권센터장)

1. 들어가는 말

지자체 인권제도의 현황 및 인지도 조사는 지자체별 인권제도 현황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지자체 인권제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 인권제도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서는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전반을 살펴기에는 자료가 미흡해 일단 인권제도 영역만 떼어놓고 살펴보겠다.

지자체 인권제도는 법률이 아닌 인권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지자체 인권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 인권제도는 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요인으로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지자체 인권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최근 인권제도가 후퇴된 지자체 사례를 통해 인권제도 조사 및 분석 시 필요한 지자체 인권제도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토론자가 근무하는 충청남도는 인권조례가 제정된지 11년, 인권전담부서(인권증진팀)가 도입된지 8년, 인권센터가 설치된지 7년이 되었지만 주민발의로 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제도 역시 존립 여부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8년에 이미 한차례 폐지된 경험이 있는데 당시는 집행부인 충청남도가 조례 폐지를 반대했고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의회가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는 폐지되지 않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3년 또 다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가 제기되고 의회가 이를 수리하고 발의함으로써 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하자 충청남도의 인권제도는 2018년과는 다르게 위기를 맞고 있다. 기존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올해 8월에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위촉하지 않고 있고, 24.1.1에 임기가 끝나는 인권센터장과 1명의 인권보호관의 자리를 메꿀 신입 인권센터장과 인권보호관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24.1.2부터는 인권센터장과 1명의 인권보호관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보통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2개월 전에 채용 계획을 세우고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인권침해상담조사 구제 업무는 인권센터장한테 전결권이 있어 인권센터장 없이 인권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인권센터장 대신 도민참여증진팀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한 신청인과 신청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의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법률로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더라도 인권조례 상에 인권센터의 독립성 보장 조항이 있고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는 인권센터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인권센터장을 제 때 채용하지 않아 인권센터장 없는 인권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인권제도의 후퇴를 가져오는 사안이다.

이같은 충남의 상황을 볼 때 지자체 인권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인권제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과 지자체 인권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규명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지역별 인권제도의 현황 및 쟁점

중간보고서에 있는 지역별 인권제도 현황을 보면 2022년 것이므로 2023년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3년 현재 2022년에 비해 인권제도가 후퇴한 지자체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2023년 현황을 조사해 인권제도가 후퇴한 지자체와 타 지자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권제도 종류별로 분석 시 필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다.

1) 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 제도 개선 등 지자체 인권제도 중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인권제도이다. 2023년 대구 광역시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인권위원회를 폐지하였고 충청남도도 인권위원회 임기가 2023.8월에 만료되었음에도 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제5기 인권위원회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 대구처럼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인권위원회의 존폐가 결정된다면 지자체 인권제도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인권제도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이 중요한 것은 광역지자체의 인권위원회가 기초지자체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에 인권조례가 모두 제정되었지만 현재 인권위원회를 운영중인 시군은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3곳 뿐이다. 몇 개 시군은 초기에 인권위원회를 운영했으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새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마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충남의 기초지자체도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인권행정기구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 인권전담부서는 지자체 인권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자체 인권제도는 이들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① 인권보호관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를 하는 인권보호관이 설치되어 운영되더라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를 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인권보호관의 직급과 임기, 고용 안정,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의 전결권을 누가 행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보호관이 소속된 부서가 인권보호관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독립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인권보호관 소속 부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② 인권센터

인권센터는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영의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인권센터가 민간위탁된 경우는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는 공무원이 할 수 있으므로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를 제외한 인권교육 및 인권 홍보, 인권단체 교류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인권단체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인권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인권센터 유무 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인권센터인지를 조사해야 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대전광역시 인권센터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가 수탁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수탁을 철회하라는 항의를 받다가 인권센터의 민간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전광역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인권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 시 반인권 단체를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청남도처럼 인권센터를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인권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외부에서 채용하는데 인권보호관이 사직하거나 충남의 경우처럼 인권조례 폐지 절차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을 제 때 뽑을 수 없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권침해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인권센터장에게 전결권을 주고 있는데 신임 인권센터장 채용 시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직영하는 인권센터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채용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인권센터가 공백 없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경우는 인사 이동 시 공백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데 반해 인권센터의 경우 인원 보충이 되지 않아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③ 인권전담부서

인권전담부서의 단위가 “과” 단위인지 아니면 “팀” 단위인지에 따라 인권행정업무가 지자체 행정의 주요 업무인지가 결정된다. 인권담당관처럼 “과”단위로 편제되면 인권

정책팀, 인권영향평가팀, 인권단체 교류협력팀, 인권센터 등 팀을 둘 수 있고 부서로서 역할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전담부서가 “과”단위가 아닌 “팀”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엔 인권센터, 특히 인권센터를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엔 인권팀과 인권센터가 소속된 부서(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감사위원회 등)가 인권이 아닌, 성격이 다른 팀들과 혼재하므로 인권부서로서 색깔을 분명히 하지 못하게 되며 지자체장이 인권업무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권업무가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인권전담 부서가 지자체장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과”단위 인권담당관이 필요하고 인권담당관에게는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민참여증진팀과 인권센터가 자치행정과 소속이고 자치행정과는 그 외 다른 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인권업무가 아닌 다른 팀들의 업무가 주요 업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전담부서가 “팀”단위인 지자체는 “과”단위의 인권담당관을 도입해야 인권업무의 주류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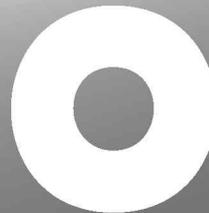
지자체 인권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른 환경, 역사의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일률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인권제도가 폐지되거나 독립성이 후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지자체 인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2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 제안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석(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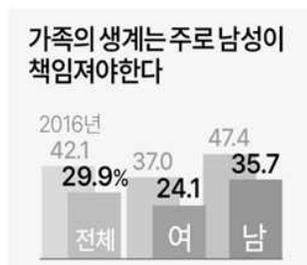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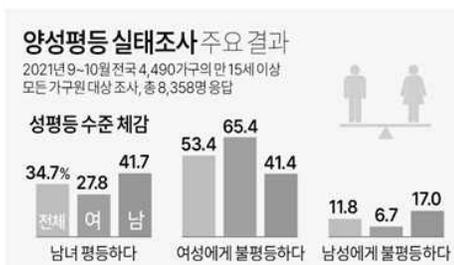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여성혐오의 세대갈등: 한국사회의 남녀갈등의 현실인가vs 인식인가

한국사회의 남성과 여성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견해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가인권통계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자료는 매우 소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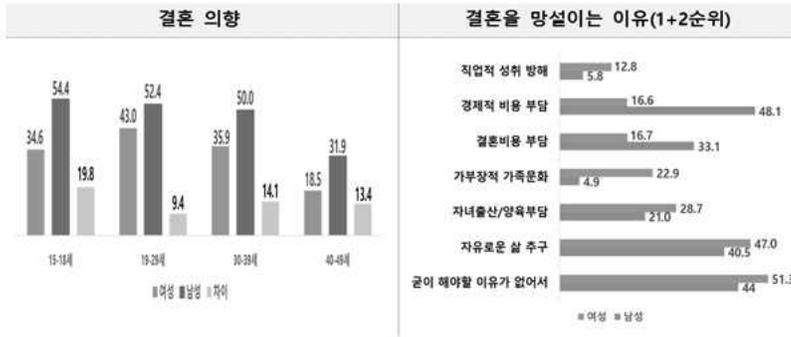
이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31.2%)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분석에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 부각되도록 하는 연령별 교차분석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성혐오와 차별과 관련되어서는 성별 특성못지 않게 세대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art 1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



출처: 연합뉴스

Part 1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



출처 : 통계청

20대 남성의 경우 경쟁지상주의, 능력지상주의, 약자혐오 성향이 강하며, 스스로를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평등 불공정 불안정 사회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점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앞서의 조사결과 20-30대 여성은 우리나라의 인권 개선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다른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76.7%), 우리나라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가장 낮으며, (66.2%)—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안전권이 존중되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20-30 대 젊은 여성은 정책에 있어서도 독특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 성별임금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반대 비중 높은 반면에, 생리휴가, 육아휴직,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성향이 지속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art 2 성(性)과 세대가 합쳐지면 갈등이 증폭되다

- 1) 뜨거운 논쟁: 독박육아 vs 독박병영, 양성평등 징병제
- 2) 젠더갈등의 세대갈등화
 - 취업 후 업무능력 차이
 - 여성이 대체로 뛰어난 것 같다: 20대 남자: 5.1% vs 20대 여자 19.0%
 - 남성이 대체로 뛰어난 것 같다: : 20대 남자 43.8% vs 20대 여자 11.6%
 - 남녀 간에 취업기회는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 20대 남자 1.6% vs 20대 여자 19.2%가 그렇다고 응답
 - 한국여성은 연애와 결혼에서 남성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20대 남자 54.4%, 20대 여성 21.5%)
 - 남녀 간의 취업경쟁은 공정한 편이다(20대 남자 42.9%, 20대 여자 14.5 %)
 -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20대 남자의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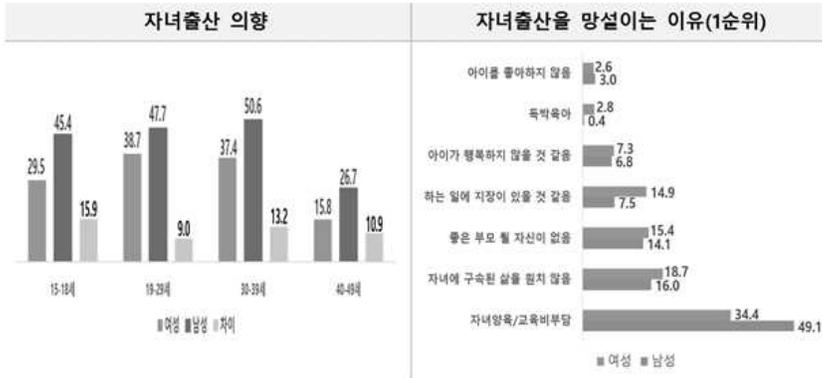
출처: 2022 전관율, 정한율 <20대 남자>

이러한 젊은 세대의 성별 갈등의 이면에는 여성할당제는 남성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제도인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남성 육아휴직제 사용자가 늘어나면 여성은 경력단절은 줄어드는가? -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를 줄게 하는가? 등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때로는 독박육아 vs 독박병영, 양성평등징병제 등 이슈에 따라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젠더와 권력이 맞나는 지점에 대한 분노감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양상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연구에서 20대 여성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 역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대의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참여한 활동의 수가 가장 많은 집단 역시 20대 여성으로 20대 여성은 자신들이 받은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바꾸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art 1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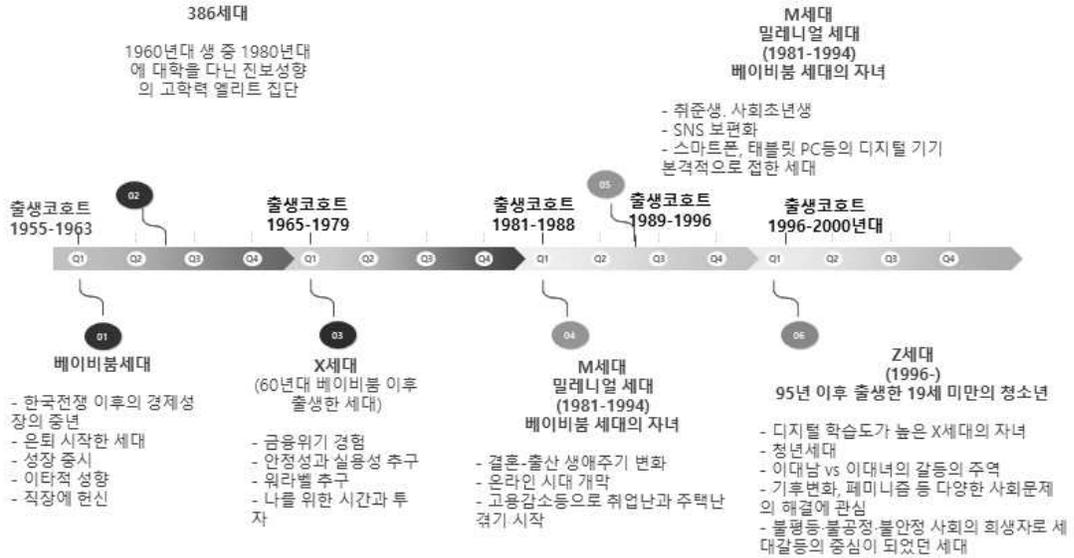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는 이전의 조사에서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의 상호교차성으로 규정되는 집단이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의 차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성혐오와 차별에 대한 남녀와 세대는 상생관계 아닌 승자독식의 논리 갈라치기의 논리들이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국가인권통계가 이후에도 다양한 논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MZ세대-일부 이미 40대에 접어들고 있어 더 이상 청년세대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청년과 중년은 미래의 노년대상 정책의 수혜자-현 시점에서의 세대간 공정성이 영원한 공정성의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국가인권통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남성과 여성 혐오와 차별에 대한 세대간 인식변화에 대한 자료가 시간이 거듭되어 쌓여 갈수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리라고 보여집니다.

논쟁점이 되고 있는 에이징효과(나이가 들수록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와 코호트효과(젊었을 때 정치성향이 나이가 들어도 유지되는 성향)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계열적 연구가 축적되어가고 있는 국가인권통계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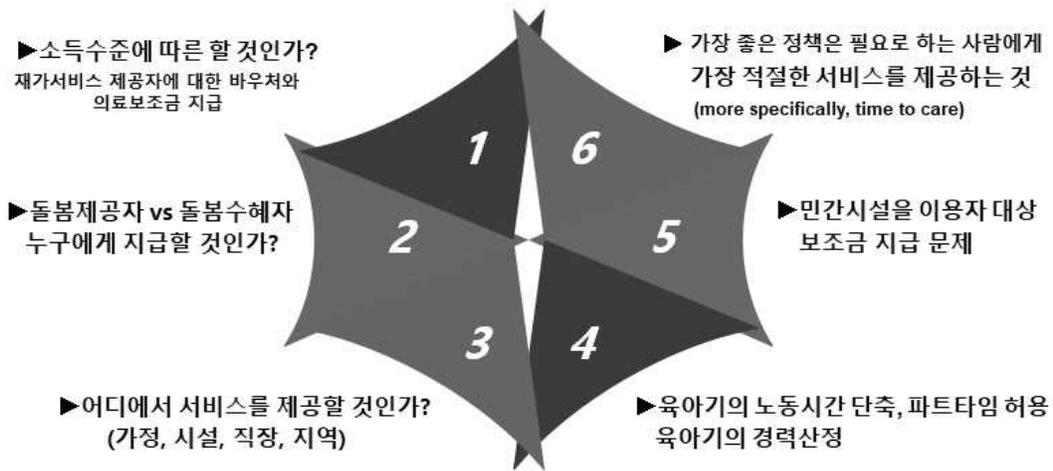


Part 3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시점을 어디에서 볼 것인가? 세대를 보는 시각에 시간을 고려하자
- 끈대도 한 때는 X세대였다 (한국일보 2021. 9. 9): 세대는
- ->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단위라기보다는 생애주기에서 변화해가는 위치
-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정보화 세대, 디지털 세대 ...
- 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MZ세대-
 일부 이미 40대에 접어들고 있어 더 이상 청년세대가 아니다
- -> 지금의 청년과 중년은 미래의 노년대상 정책의 수혜자
- 현 시점에서의 세대간 공정성이 영원한 공정성의 기준은 아니다

아울러 성과 연령이외에 여성에 대한 혐오를 보이는데 있어서 집단별 차이를 유형화해 그들이 누구인가를 규명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성혐오와 관련해서 무관심층, 페미니즘 옹호층, 성역할 보수층, 적극적 여성우대 반대층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집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art 3 **향후의 정책방향: 세대간 차이보다는 공존을 부각시키는 정책**



2.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젠더분석

코로나 이후의 거리두기 강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고립감과 단절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대를 추구했습니다. 1) 집단속에서 개인의 고립감과 소외감이 증진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가치와 가족을 재발견하고, 2) 코로나이후: 재택근무, 환자는 가정으로의 격리, 재택치료, 홈트가 일반화되면서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가정'의 중요성 부각 되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돌봄을 받아야할 노인, 어린이, 환자가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근무(재택근무)와 운동(홈트)과 여가활동 등 개인의 거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의 의무는 증가되고, 가족내의 갈등과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도 증가되었다는 해외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난민, 장애인, 특정 종교인, 특정 지역출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증가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 제언



이용석(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2023년은 ‘장애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한 해였다. 그동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소수자 혐오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꾸준히 조사의 대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이슈의 주요 쟁점으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2023 인권의식실태조사 중간 보고서’를 확인해 보더라도 혐오표현 대상으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7.7%로 노인(7.6%)보다는 약간 높고 성소수자나 정치인에 비해서는 낮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31.2%)이나 남성(8.5%)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에 비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소수자들이 경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경험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장애혐오’가 안정적(?)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 토론문(한국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대안 <유은혜_숭실대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는 분명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기왕에 토론에 나선 만큼 장애혐오에 대한 문제는 짚을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1년 조사해 발표했던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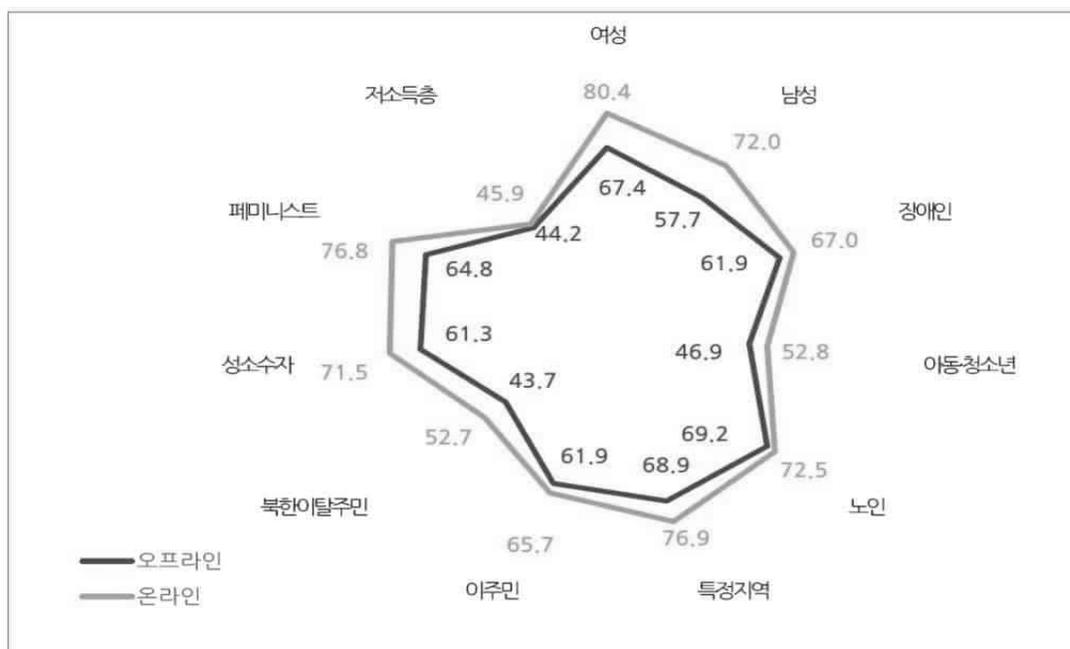
■ 분명하게 드러났던 ‘혐오표현’심각성

당시 조사는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3%가 온라인 혐오표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고처리 절차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 창궐 이후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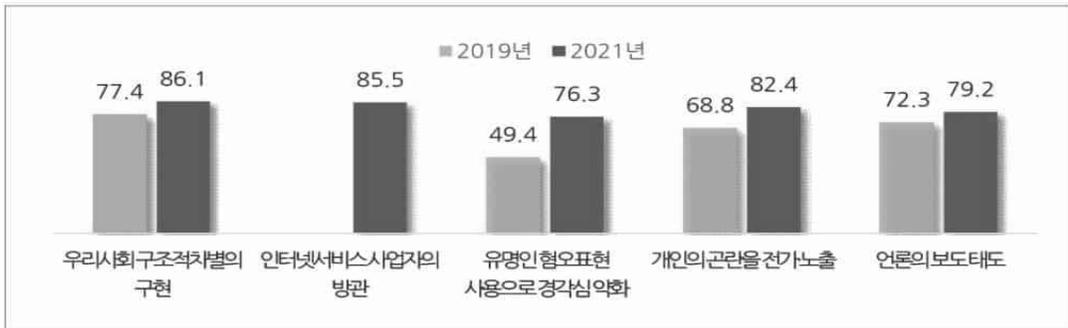
▲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이 오프라인 혐오 표현보다 더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_온라인혐오표현인식조사>

당시 조사에서는 혐오표현 대상으로 ‘여성(80.4%)’이 가장 높았지만 이외에도 ‘특정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 ‘노인(72.5%)’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혐오도 67%나 되어 2023 인권의식실태조사 중간보고서’와는 차이를 보였다.



▲ 여성이나, 특정지역,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온라인의 혐오 표현 대상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_온라인혐오표현인식조사>

혐오표현의 원인으로 86.1%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86.1%)’과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약자에게 표출(82.4%)’, ‘언론의 보도 태도(79.2%)’ 등을 꼽았다. 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20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하였는데, 이는 정치인 등의 혐오표현이 사회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의 원인을 우리사회의 구조적 차별 구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_온라인혐오표현인식조사>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료를 더 소개하고 싶은데, 지난 2023년 10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주요 포털 및 플랫폼별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2,622건)’와 ‘일간베스트(1,474건)’가 4,096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전체 (4,735건)의 87%에 달했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8월 말	합계
디시인사이드	578	177	126	812	929	2,622
일간베스트	513	201	154	300	306	1,474
네이버	17	4	6	14	6	47
카카오	1	4	3	2	6	16
기타	297	87	19	94	79	576
합 계	1,406	473	308	1,222	1,326	4,735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타의 경우 유의미한 시정요구 건수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분류)

※ 2021년 1월 30일~8월 8일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심의 공백 있었음

▲ 최근 5년간 주요 포털 및 플랫폼별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정필모 의원 보도자료>

160	일반	아 허들러처럼 장애인 독가스 말살 찬성			
159	일반	지체장애로 군대연제 받았으면 장애만정 받을수있나? [1]			
158	일반	장애인은 사회에 아무 도움안된다 [3]			
157	일반	장애인연금 세금납부다 폐지해라			
155	일반	장애인들이리 utf하면 즐라 재밌을꺼 같지 않나? [1]			
154	일반	초면부터 복지카드 었다고 말 꺼내는사람은 지적장애... [1]			
151	일반	원래 이런 걸임? [1]			
150	일반	허벅지살 빼고 싶은데 스퀘트는 무리가요?			
146	일반	제발 그냥 *역지마			
145	정보	*o*x들이 몰카 도청장치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이유			
143	일반	정신질환 장애인은 가워두고 키워라 [8]			
135	일반	부모님 둘다 중증장애인이신데 이걸로 특수전형 해서... [5]			
134	일반	전장연 보면 느끼는 정.real			
131	일반	이런거 보니까 허들러가 이런 유행이던 것 같다 [2]	이름:		
130	일반	차라리 몸에 신너부라고 국회로 달려들던가 [1]			
126	일반	전장연 시위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5]			
121	일반	변하는건 없다			

▲ 디시인사이드(왼쪽)와 일간베스트(오른쪽)에 게시되어 있는 장애혐오 발언들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갈무리>

물론 온라인 상에서의 차별·비하 등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4월 28일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운영) 등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KISO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표현을 포함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삭제, 노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6.18.)’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22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의 댓글, 2023년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 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되어 가는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원칙의 수립과 이행,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등,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올해의 3대 ‘장애혐오’ 사건

(1)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 박경석 vs 오세훈

연초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이동권, 탈시설에 대한 견해차로 지난해 초에 벌어졌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논쟁이 재현되었다.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전장연은 약자가 아니다’라며, “지하철을 84회나 운행 지연시키고, 철도안전법상 중범죄인데도, 경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강자냐 약자냐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 전장연이 강자라면 진짜 강자이자 더 책임이 무거운 기획재정부에도 평등하게 이 문제를 지적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의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된다는 주류 언론을 통해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혐오적 존재로만 취급받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준석, 올해 오세훈 등 주류 정치인들과의 전면적인 ‘이동권’ 및 ‘탈시설’ 논쟁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지도 받았지만, 비장애인들이 주류인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장애’가 노골적으로 낙인화되는 부작용도 겪고 있다.

(2) 서현역 사건 -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혐오(악마화)

지난 8월 3일 분당의 서현역에서 벌어진 흥기 난동 사건이 터지고 범인인 최 모씨가 조현성 성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에 장애계는 언론들이 기사의 헤드라인에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관 짓지 말 것을 권고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내면화해 정신질환자들이 도저히 공동체에 공존할 수 없는 이질적이고 불안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결국 정신질환자의 격리 요구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가세했다. 이참에 정부는 정신질환자 범죄의 대책을 이유로 ‘사법입원’ 제도화를 통해 강제입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법입원제도’는 입원 결정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대신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입원 여부를 정하면 그만큼 환자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사법입원제도’도 입원 여부 결정 주체만 다를 뿐 강제입원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위헌판결과 배치되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것. 그러면서 사회적 지원은 외면한 채 사회로부터 격리나 배제 중심의 제도에만 관심을 두는 정부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비판받아 왔다.

(3)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장애학생 혐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 와중에 웹툰작가 주 모 씨가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소송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프레임이 ‘장애아동 혐오’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이에 편승한 언론들은 발달장애 특성을 특수교사에 대한 공격처럼 보도하면서 장애혐오가 각종 SNS에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혐오가 번졌다. 하지만 현재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에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지적은 장애계에서 그동안 있었지만 그동안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를테면 보통의 학생들의 평균에 맞추어져 있는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자신만의 루틴으로 소리를 내면 수업 방해 행동이 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고도화되는 학습 내용에 이들은 무기력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돌발행동들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장애학생들은 정책적 고려대상도 되지 못했다. 이렇듯 비장애학생에 맞춰 세팅된 학습 공간과 규범 성취 수준에 장애학생들이 무조건 적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인 학대’일뿐이다.

■ ‘혐오’는 늘 ‘사람’에게 향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은 그 자체로 해당 집단에 대한 기피와 차별, 물리적 공격, 학살 등의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유권규약이나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에서는 혐오표현에서 적의(hostility)나 증오(hatred)의 선동을 규제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다수의 공포와 기피 또는 배제 현상과 장애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표현은 지극히 전통적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혐오는 학술적으로도 그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으며 법률적 개념도 아니며, 장애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장애비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혐오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에 근거하고, 혐오 표현의 대상은 소수자와 일반 청중이며, 혐오표현의 행위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홍성수 2015)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혐오표현을 통해 고통받는 소수집단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의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표현과 장애비하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뒤섞여 혼용되면서 은유되거나 진화된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복제되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제조약들에서는 혐오표현이 특정집단에 대한 기피와 차별, 물리적 공격, 학살 등의 해악을 초래할 수 있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였던 2013년 6월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제2항 제8호)을 포함시켰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2019년 2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했던 적이 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괴롭힘 등’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혐오표현 중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표현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만 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은 없다.

물론 규제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혐오표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독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제정 이후 관련 범죄가 되려 크게 늘어났다. 2014년 1,029건에서 2016년 1,698건. 표현단계에서 강력한 입법 조치를 취했음에도 거기서 파생되는 범죄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은 매년 3~4건, 독일이나 프랑스가 100여 건에서 200여 건 정도 법적 제재를 받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경우 고의성 있는 혐오표현은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형법에 ‘중요 정의’를 추가해 혐오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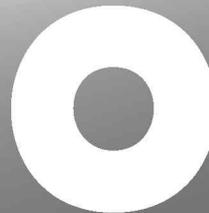
분명한 것은 법제정이 극단적인 편견을 가진 선동가들의 행동까지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충분한 행위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법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 하며, 사회 전체에 자유와 평등은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나 처벌이 국가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 하고 있다는 신호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소수자들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을 안심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를 향해 혐오표현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인시켜줄 수는 있다. 혐오표현이 범죄로 공인받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강력한 처벌 의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며, 혐오표현이 폭력이나 실제 모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형법으로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이 사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끝>

지정토론 3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활용한 감염병 상황 관련 인권 쟁점 분석

한귀영(한겨레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활용한 감염병 상황 관련 인권 쟁점 분석



한귀영(한겨레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1.

본 연구는 감염병이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 수행.

코로나로 인한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 과반이상이 코로나19가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 가운데, 분석결과, 저연령층은 인권 상황을 덜 심각하게 평가. 보수층,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자신에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대체로 고령층 보다 젊은층에서, 보수층 보다 진보층에서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온 견해임. 과거 견해와 배치되는 이번 조사 결과의 특이성은

- 1) 인권 일반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점
- 2) 코로나 방역의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
- 3) 코로나 방역의 성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짚어야 의미가 클 것임

기존의 연구 동향 검토에서도 드러나듯이 코로나19 과정에서 등장한 인권 쟁점은 주로 방역 등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연결되며,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함.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여러 인권상의 제한 조치가 강화되었던 2020년 실시된 다양한 조사들에서도 정부 신뢰가 여러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이며, 이 정부 신뢰는 당시 문제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직결됨. 젊은층, 진보층에서 오히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제한 조치가 인권 보다 우선한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남.

2020년 6월 한겨레신문 조사에서 (인권상황을 포함한) 우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질문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66.2%(‘매우’ 10% ‘비교적’ 5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7.3%(‘매우’ 18.6% ‘비교적’ 8.7%)에 그쳤음. 2014년 12월 동일한 질문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35.8%,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60.5%였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라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작용했지만 K방역의 성공으로 낙관적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었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념성향에 따른 양극화 경향이 커, 진보층은 압도적 다수인 84.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긍정 47.6%, 부정 47.2%로 팽팽했음.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기대 등 여러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남.

<표> 우리사회에 대한 평가 (단위 %)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체		66.2	27.3
연령	만 19세~29세	59.4	29.0
	30대	63.7	25.8
	40대	73.9	22.0
	50대	72.0	25.8
	만 60~64세	59.5	35.7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	84.1	14.3
	중도	59.5	28.3
	보수	47.6	47.2

자료 ; 한겨레신문 ‘포스트 코로나 조사’ 2020년 5월

비슷한 시기, 시사인-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도 공적 의료기관과 국가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으며, 건강보험(88%), 고용보험(78%), 기초노령연금(72%), 국민연금(67%) 등 복지제도 신뢰도도 매우 높게 나타남.

2.

신뢰가 인권 존중 등 사회전반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적 제도를 넘어 사회 일반으로 향해야 함. 일상에서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 즉 일상적이면서 구체적인 신뢰가 추상적 신뢰 보다 중요함.

앞의 시사인-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시민 일반에 대한 신뢰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코로나19 재난을 함께 겪으면서 타인이 안전해야 나의 안전이 확보되는 초연결 생존사회임을 시민들 각자가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됨.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시민들이 보이는 신뢰는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공적제도는 물론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 기대감도 진보와 보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정파적으로 형성된 신뢰’라는 한계가 뚜렷한 셈.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정파적으로 형성된 신뢰를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나타나는 여러 징후들은 이러한 경향을 보임.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한국인들이 좀 더 권위주의적으로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음. 진보층일수록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감염병 대처 임무를 다른 민주적 절차, 인권보다 우선시 하는 모순적 경향도 나타난 바 있었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약자의 아픔과 접촉하고 공감하며, 사회가 연대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되,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민적 공동체’를 통한 경험에 매개되어야 하는데, 개인과 국가가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감수성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여러 경제적 위기 속에서 퇴행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음

이같은 기존 연구에 기반해 코로나19와 인권 상황에 대해, 2020년 이후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하면 이번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정권교체 등과 맞물리면서)

인권상황 전반이 아니라, 장애인, 필수노동자층(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코로나 19로 인권 이슈가 두드러진 집단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대목임. 즉, 코로나19 시기 사회전반의 보편적 인권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이슈가 되는 인권집단(직접적 영향을 받는)을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좀 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을 통해 학습하고 정책적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집단 별로, 겪고 있는 고통을 살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들어, 20대의 경우,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결정적이며, 특히 20대 여성은 우울 고립감이 클 것으로 보임(20대 여성 자살율이 급속히 늘어난 바 있음).

30대는 돌봄공백과 자녀 교육문제

40대는 소득감소, 경제적 어려움(영업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문제)과 돌봄문제, 교육 문제 등

50대는 소득감소, 경제적 어려움 등

또한 장애인, 필수노동자층 등 코로나19시기에 고통이 부각된 집단에 대한 정밀 분석도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활용한 감염병 상황 관련 인권 쟁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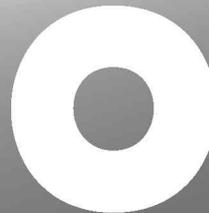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정토론 4

통계로 본 인권 분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격차

강현철(호서대학교 빅데이터학과 교수)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통계로 본 인권 분석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와 격차



강현철(호서대학교 빅데이터학과 교수)

○ 개요

- 사용가능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 격차를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하게 분석하였음.
- 독자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통계 자료의 원천(source), 분류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계층 간 소득격차와 사회 안전망

- 계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노인 가구, 여성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등
-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 노인공공복지 지출 등

○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 계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 관리직 등
-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성별) 임금 격차, 산업재해 피해 격차 등

○ 의료 접근성의 지역간 격차

-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의료 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 지수 등

○ 디지털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 계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등
-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정보화 등
- 소득을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고려하는 접근법이 필요함. 예를 들어, 고소득 층에서 특정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가 크지 않고(모두 정보화가 높고), 저소득 층에서도 특정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가 크지 않을(모두 정보화가 낮을) 수 있음.

통계로 본 인권 분석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와 격차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 오늘 의미가 깊은 “2023 국가인권통계분석”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내용을 보며, 인권의 범위와 깊이가 매우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지막 발표자료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격차입니다. 발제문에서도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의료격차 및 디지털 격차라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언뜻 하나하나의 주제가 방대하고, 간단히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로 여겨집니다.

- 경제적 격차는 빈곤과 노동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었습니다.
 - 인권통계 경제적 격차통계로 빈곤과 노동시장 통계를 다룬 것은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빈곤문제는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통해 절대적 빈곤을 넘어 이제는 상대적 빈곤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를 넘어 격차까지 분배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료에도 있듯이 빈곤 측면에서는 노인빈곤과 더불어 중장년 빈곤의 문제가 중요하고, 분배 측면에서는 격차로 인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세대 노인의 경우 주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라는 점에서 다른 제도인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연계와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령층에 대한 빈곤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조기퇴직 후 혼자 사는 1인 중장년은 빈곤, 정신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인권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빈곤 현상과 더불어 격차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에 그동안 주목했다면, 소득 측면에서는 양극화 보다 격차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자산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간 격차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 격차 변화(통계청 기준)



자료: 김태완, 이주미 외(2022). 한국사회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지만, 잘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도 그 격차문제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분석을 보면, 기업규모 측면에서 2011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36.3%에 불과. 격차는 2021년에 41.0%으로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노동자의 임금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심각. 2021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여성노동자 소득이 1,796만원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 남성노동자 소득은 9,092만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 중 (김태완 외, 2023)
- 노동시장 통계를 다룰 때, 특정 측면만을 다루기 보다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면, 노동시장내 격차 현상을 더 자세히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인권통계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적 격차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중심으로 구슬되어 있습니다.

- 의료접근성 문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오랜 기간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이며,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지방, 특히 농어촌의 군지역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접근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는 지역소멸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지역 간 의료격차에 대한 더 세부적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참조하면 격차 현상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농식품부는 2010년대부터 지역간 격차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줄이고자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매년 단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속에는 의료시설과 의료접근성에 대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인권통계에 귀히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접근성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시설을 더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특히 전문인력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대가 중요하게 영향을 줄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농어촌지역 고령인구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돌봄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자료에 있듯이 농어촌은 빈곤, 외로움 등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과 자살문제 등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돌봄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도 지역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 문화적 격차는 디지털 격차라는 현재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 격차는 양극화, 격차 현상 등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사회영역에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사회, 사회복지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디지털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통계로 여겨집니다.
 - ※ 디지털 복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선, 대상자 욕구에 부응, 포용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최조순, 2022, 재인용)
 - 현재 제시된 내용은 디지털 격차의 단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격차 현상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 무엇보다 정보격차에서 나타나는 점은 앞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노동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정보숙련자와 비숙련자간 차이, 빠른 정보 습득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격차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인권통계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오늘 인권측면에서 주요한 통계가 다루어지고,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좀 더 발전되고 새롭게 개발된 인권통계가 잘 구축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 발행일 | 2023년 11월 23일

| 발행인 | 송 두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22 | F A X | (02) 2125-0918

| 웹사이트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ISBN 978-89-6114-976-1 9331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3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